

3) 산업조사위원회에서의 총독 연설(演述)

산업을 진흥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조선 통치의 요체(要諦)입니다. 선임자(先任者)들도 이에 대해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운 바 있고, 현저한 성과를 올린 것은 내외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가 대명(大命)을 받아 조선에 부임한 것도 이러한 진보를 이어나가 선임자의 고심(苦心)과 충심(衷心)을 헤아림과 동시에 일한합병의 본지를 명심하여 한층 더 조선경제력의 발전과 민중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반 계획과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의 실행에 따르는 경비 문제와 또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중한 연구조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국운소장(國運消長)의 연결점입니다. 관계되는 시설은 매우 폭넓고, 이루어져야 할 사항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경제계의 정세에 따라 물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만, 미리 대강의 방침을 설정하여 관민의 협조를 받아 각 제반 시설에 일정한 맥락 계통을 세우는 것은 모든 국(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합니다. 현재 시정 이래 이미 20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조선 산업의 추세도 대체적인 것은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야 할 기본이 되는 일정한 방침을 확립하여 장래의 개량과 발달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요구에 합치하고 또한 시대의 추세에 순응하여 합병의 본의(本義)를 발양(發揚)하기 위해서 산업의 발달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업의 발달은 주로 민간업자의 계획경영에 기달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러한 방침은 오히려 건실한 산업의 발달에 장애가 되거나, 국력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산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폭넓게 조야의 유식(有識) 인사들을 초청하여 심의를 맡기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심의를 부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애하는 위원장께서 각 부문에 알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본회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중한 심의를 수행하여 조선의 산업개발상 적절한 안(案)을 도출해 내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에 개회에 앞서 저의 소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출전 : 産業調査委員會二於ケル總督演述 『産業調査委員會會議錄』, 1921년 9월, 21~22쪽〉

4) 산업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건

관통첩(官通牒) 제89호

1921년 10월 5일

정무총감

각 도지사, 각 소속관서의 장 전(殿)

산업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건

금년 9월 15일부터 20일에 걸쳐 개최된 산업조사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가결하고 총독에게 답신합니다. 조선 산업개발상 중요사항이므로 금후의 계획상 기준(規準)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래의 시설에 대해서 유감없이 계획을 세워 다음과 같이 통첩합니다.

또한 본부에서 동 위원회에 제시한 조선 산업에 관한 계획요항 참고서 1부를 송부합니다.

산업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조선 산업에 관한 일반방침

조선에서 산업상의 계획은 제국산업정책의 방침에 순응해야 한다. 안팎의 추세, 특히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령 아시아 등 인접 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찰하여 이것에 대해 대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산업은 시정(始政) 이래 현저히 진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진보는 필경 초기에 속하는 것이며, 그 기초는 또한 박약하여 앞으로의 발달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식, 기능의 향상과 발달을 촉진하고 근면, 협동하는 관습을 조장하여 산업 제반의 조종 및 교통, 통신을 정비하고 자금력의 충실 및 금융의 소통을 도모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및 일본과 조선의 관계 직무를 한층 밀접하게 하는 방법이 요청된다. 조선 경제력의 진보와 일본과 조선 공동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조선 산업에 관한 제반 정책의 실행은 일본 및 인접지와의 관계, 조선 내부의 사정 및 재정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설정하고 경중을 살펴 안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 산업에 관한 계획요항

제1. 농업에 관한 건

1. 조선의 부력(富力)을 증진시키고 또한 제국의 양식을 충실히 하는 데 공헌하기 위한 산미(産米)의 개량과 증식(增殖)을 도모할 것.
2. 양식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쌀 이외의 식용작물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3. 수입과 수출에 따라 농산물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4. 조선내 공업의 기초를 배양하기 위하여 공업원료에 적당한 농산물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5. 농가의 부업으로 잠업의 장려책을 도모할 것.
6. 농업노동력을 충족하고 식육을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7. 조선에 적응하는 말 및 양의 종류를 실험할 것.
8. 농업의 건실한 발달을 위하여 소작 관행을 개선하고 기타 소농(小農)의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것.

제2. 임업에 관한 건

1. 목재 수급의 조절, 산림의 개발 및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임야의 관리와 경영을 통일하여 합리적으로 임업을 시행할 것.
2. 민유임야의 조림(造林), 특히 황폐한 산야의 복구를 위해서 적당한 시설을 확충할 것.
3. 불필요한 임야에 대해서는 조림의 추진 및 연고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당히 처분할 것.

제3. 수산업에 관한 건

1. 어획의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장의 보호, 확장 및 어선과 어구(漁具)의 개량, 증설을 추진할 것.

2. 어업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획물의 처리, 제조방법의 개량 및 대(對) 중국 무역의 진흥을 도모할 것.
3. 어업의 안전을 도모하여 어획물의 처리를 정리하고 어항의 정비에 노력할 것.
4. 수산업의 견실한 발달을 위하여 어민의 보호 및 수산단체의 개선과 발달을 도모할 것.

제4. 공업에 관한 건

1. 조선의 경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원료 및 생산의 소재지가 있고, 조선 내의 수요 또는 수이출(輸移出)에 적당한 공업품을 제조하는 공업의 발달을 도모할 것.
2. 공업의 경영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원료의 공급, 노동능률의 증진, 제조방법의 개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원조할 것.
3. 소규모 공업을 보호하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것.

제5. 광업에 관한 건

1. 광업의 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질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생산비 경감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
2. 광업의 이익을 보전하고 조업(操業)의 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광제련(環鑛製鍊)의 보급과 개선에 힘쓸 것.
3. 노동과 자본의 조화, 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갱부의 보호, 유액(誘掖)⁴⁾에 노력할 것.
4. 금광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 금산(金山)을 민간에 개방할 것.

제6. 연료 및 동력에 관한 건

1. 가정용 연료의 공급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탄자재의 증식 및 이용의 개선을 도모할 것.
2. 연료 및 동력의 공급을 안전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연탄, 갈탄전(褐炭田)의 개발을 조장하고 이들 석탄의 이용을 증진할 것.
3. 수력전기사업 발달의 자원이 되는 주요 하천의 수원 함양에 힘쓰고 발전수계를 탐사할 것.
4. 동력통일에 관한 제반 조사연구를 실행할 것.

4) 남을 이끌어 도와준다는 뜻.

제7. 산업자금에 관한 건

1. 조선의 산업을 진흥하고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집적을 도모할 것.
2. 금융기관의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산업자금이 보급, 융통되도록 할 것.

제8. 해운시설에 관한 건

1. 중국 무역을 조장하기 위하여 상해(上海) 이북의 주요 항구들에 대하여 항로를 개척할 것.
2. 조선치적선(朝鮮置籍船)의 일본연안 무역에 관하여 일본 선박과 동일하도록 길을 열 것.

제9. 철도시설에 관한 건

1. 관사(官私) 철도의 보급을 도모할 것.
2. 교통계통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선로망의 조사를 실행할 것.
3. 기성 철도의 개량, 기타 철도 이용에 관한 설비의 충실에 유의할 것.
4. 철도의 경영에 대해서는 조선의 산업 발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제10. 도로, 항만, 하천에 관한 건

1. 도로의 보급을 도모할 것.
2. 기성 도로 구조물의 완비를 도모할 것.
3. 도로의 유지를 완전하게 할 것.
4. 주요 항만의 설비에 대해서는 점차로 완성하도록 할 것. 기타 항만에 대해서는 방파제, 기타 긴급한 시설을 조성할 것.
5. 하천은 현재 조사 중이므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가(市街) 방수(防水)처럼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의 전체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상공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할 것.
6. 내륙수운의 이용을 도모할 것.

이상에서 기술한 이외에 산업조사위원회에 농업, 임업, 수산업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 위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업에 관한 건

농업은 조선 산업의 대중을 이루며 조선 인구의 8할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업의 흥폐는 직접적으로 민중의 복리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농업의 진작과 장려에는 산업에 관한 계획 중 가장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인정된다.

농업에 관하여 이번에 제출한 계획 요항은 대체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시설의 진보를 기대한다. 특히 산미(産米)에 대해서는 경작지의 확장·개량 및 경종법(耕種法)의 개량, 쌀 이외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면화·과수의 재배 장려, 잠사업에 대해서는 양잠 호수(戶數)의 증가, 축산에 대해서는 축우(畜牛)의 개량과 증식, 또는 소농(小農) 보호에 대해서는 소작 관행의 개선 및 부업의 장려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산미의 개량과 증식은 단순히 농업에서만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산업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총독부의 산미 증식에 관한 제1기 계획은 현재의 예정을 최저한도로 간주하여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 1) 경지의 확장, 개량에 관한 기본 조사의 조속한 완성
- 2) 토지개량업에 관한 보조금의 증가
- 3) 토지개량사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설기관의 설치
- 4) 경종법의 개량에 관한 시설

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원(財源)의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계획의 수행에 유감없도록 할 것을 요망한다.

다음 사항은 계획요항 또는 같은 참고서(參考書)에 특기(特記)되지 않았지만 산미의 개량과 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1. 개간 간척 또는 지목(地目) 변환에 관계되는 토지의 불하 연한을 적어도 일본과 동일하도록 할 것.
2. 조선의 산미는 제국의 식량문제와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소비량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참고할 것.

임업에 관한 건

이번 제출한 계획요항에 열기(列記)한 각 사항은 모두 이의가 없는 사항들이다. 필요한 장래 이의 실시에 관하여 순서와 완급을 조절하여 실행방법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동시에 가급적 간소하고 민첩하게 그 내용을 실시됨으로써 족하다고 인정한다. 임업의

성쇠(盛衰)는 제반 산업과 심대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황(林況)과 하천의 상태는 장래에 우려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각종 산업의 근본사업으로 신속하게 삼림 및 치수 사업의 진전을 기획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연구하기를 바란다.

1. 임업 및 특정 위치에 있는 치수사업의 조화병진을 위하여 그 기관을 통일할 것.
2. 국유림이 풍부한 지방에서는 현행 영림폐지림(營林蔽支林)처럼 증가, 확장하고 각 도청에 삼림비지면의 특설기관을 배치하여 국유림의 관리경영, 소방 및 하천공사와 민유림에 대한 행정을 실행할 것.
3. 치산치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소방 및 치수 두 가지 사업은 소유 여하를 불문하고 관영으로 할 것.
4. 국유림의 존폐 구분에는 한층 주의를 기울여 장래에 관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유감없이 하도록 할 것.
5. 현재의 관설 제재사업은 그 창설 당시와 취지가 달라졌으므로 장래에는 시기를 보아 폐지할 것.
6. 임산물 처분은 국유림 생산재를 자유 처분과 임업 이익 증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7. 화전(火田)의 정리 시에는 현재 주민이 다른 상당한 생업을 얻게 하는 등 온건하고 성실한 방법을 취할 것.

수산업에 관한 건

이번 제출한 계획요항에 열기된 각 사항은 모두 필요하므로 이의 없이 오직 완급과 경중을 조절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실현하도록 한다.

조선의 수산업은 식량 정책상으로도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큰 대외무역상 주요한 산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시설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산업 시설을 위한 앞으로의 방침은 계획요항의 각 사항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지도, 장려 방침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본조사를 신속히 달성할 것.
2. 연안을 통하여 적당한 종류의 어업 및 적당한 종류의 양식업을 선택, 결정하여 수면(水面)의 경제적 이용을 증진할 것.
3. 어가(漁家)의 부업을 장려할 것.
4. 부녀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그 노동력을 수산 제조와 어가의 부업 등에 이용할 것.

산업 전반에 공통되는 건

1. 산업기술원의 수를 증가시켜 배치하고 조달하는 동시에 산업기술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
2. 산업사상의 보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업자의 지식 계몽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 실업교육기관의 확장 및 내용이 충실하도록 할 것.
3. 산업상 관계가 있는 당국자 및 실업가 다수를 일본이나 해외에 파견하여 시설과 기술을 조사, 연구하도록 할 것.
4. 산업단체의 견실한 발달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농업 및 임업에 대해서는 장래에 더 충실하도록 하며 그 이윤의 저감(低減)에 노력할 것. 또 수산금융에 대해서는 어업조합의 설치를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중산층 이하의 어민이 금융을 원활히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부에서 금융상 특별한 원조를 받도록 할 것.

산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출 의견에 따라 위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

적당한 시기에 조선에서 박람회 개최할 것.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10월 5일〉

5) 산업조사회와 향후 조선의 산업정책(사설)

현하 조선의 상태는 이미 치안이 □지(□持)되야 □일□(日)과 같이 다□다려(多□多慮)한 □가 아닌즉 전일 치안 방면에 집중하던 전력을 지금은 산업 방면에 □□하지 않으면 안 될지라. 대개 국□(國□)와 민복(民福)을 도모하려면 식산흥업(殖産興業)에 □을 선착하는 것이 경국치민(經國治民)의 제일보가 되는 것이며, 이는 또 특히 조선 통치의 진정신(眞精神)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 총독부에서 개최한 도지사회의에서 미즈노(水野) 정무총감이 훈시한 구절을

보건대 오늘 조선 통치상 치안의 유지에 전념하던 시대로부터 점차 산업시설의 완비에 노력할 시대에 들어섰다는 취지로 성명(聲明)하였다. 나는 이를 읽고 그 언□이□□(言□而□□)함을 탄실(嘆實)하는 동시에 이것이 나의 기대에 부합한 것을 또한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니, 대저 문화라고 칭하며, 산업이라고 칭하는 것의 의미를 극히 광의적으로 또는 협의적으로 사코할지라도 통치의 관념은 산업 및 그 시설과 문화 및 그 시설의 2대 분자를 포함하여 이를 화합하는 것에 귀착하게 하는 것이 □히 적당하다 할 것이다. 즉 수야 총감의 훈시(訓示)는 조선의 통치가 일시적으로부터 점차 항구적으로 옮겨가는 순서로써 산업시설□ 완비를 기하는 것이 가장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첩경이며, 또 경국제민(經國濟民)의 대□(大□)이라는 견해에 □것이라고 해석함에 족할 □□□□□□ 조선의 통치는 □□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 이에 가미한 이원적 의미를 가진 것이 타당하다고 제창하는 자로 훈시의 일절(一節)로 가히 □지(□知)할만한 수야 총감의 주의(主義)에 일체로 찬성을 표하는 바라.

하□(何□)을 막론하고 국내의 산업이 발달한 연후에야 그 인민의 생활이 유족(裕足)한 것이오, 생활이 유족한 연후에야 그 문화의 사상이 진보되는 것이니, 고로 문화의 보급은 그 기본이 생활의 유족한 방면에 있고, 생활의 유족은 기본이 산업의 발달에 따르는 것은 천고(千古)의 통칙이라. 그러므로 맹자(孟子)가 치민(治民)의 도를 자사(子思)에게 물으셨는데 자사는 선리주의(先利主義)를 제창하였으니, 이는 그 민을 이롭게 함을 위함이라. 우리 조선과 같이 산업이 쇠잔(衰殘)하고 경제가 이완(弛緩)하여 □□□□(□□□□)가 극에 달한 이때에 □를 구하는 길은 오직 위정당국자의 발분망식(發憤忘食)하고 □□ 노력에 의할 것이오. 이 노력은 식산흥업에 □주(□注)치 아니치 못할 것인즉 이번 설립에 착수한 산업조사회는 가장 그 마땅함을 얻었다 할지로다.

그러나 나는 산업조사회 개최에 관한 구체적 준비로서 개최한 산업회의소연합회(產業會議所聯合會)의 회의사항을 보건대 대체로 그 회중(會衆)의 □론(□論)과 주장은 자기의 영업적 이해타산, 또는 재주(在住)하는 한 도시(都市)의 이해타산을 기초로 한 □론(□論)이 많음과 같고, 대국(大局)으로 조선 통치에 관한 가치를 기본(幾分)이나 망각한 관(觀)이 없지 않다 하니, 금일 조선의 산업발달을 계획함에는 관민일치(官民一致)의 힘으로써 균일하게 이에 □□한 연후에야 비로소 그 공과(功果)를 취할 것이라. 한 개인의 영업주의 혹은 자기가 재주한 도시에 한하여 일국부적(一局部的)으로만 이를 노력한다면, 이는 실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함에 거리낄 것이 없노라. 만일 각 방면의 당업자(當業者)의 이해□□□□ 각 지방의 본위 형편이 전부 □□□□진대 무방하다 할지라도 불(不) □□다하면 각 □업자 내지 각 지방□의 편익, 또는 이익 □화가 조선 산업정책의 이상(理

想)으로 되지 못할 것이니, 조선 산업정책의 근본적 수립을 기하고자 할진대 개인과 토지 부분에 치우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일이다. 즉 사람과 토지의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 부분적이 아닌 보편적인 주의(主義)로써 일관된 성력(誠力)을 쏟아야 이 산업정책의 수립에 진력하는 것이라 하노라.

〈출전 : 産業調査會와 今後朝鮮의 産業政策(사실), 『每日申報』, 1921년 5월 14일〉

6) 조선 산업조사회 개최에 제하여(사실)

(1) 총설(總說)

조선의 산업정책은 조선인을 본위로 하되 특히 현재 조선인 경영에 관계한 산업기관으로써 자본이 결핍하여 영업을 이어가기에 빈한 자는 국가에서 특별히 보조를 주어 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개발의 방침을 확립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로 하여금 조선 현하의 산업상태를 고찰하게 하라. 어떠한 방면을 불문하고, 자급적 자원과 자발적인 용기가 결핍하여 도저히 산업의 발달을 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언제까지라도 자연의 □행에 방임하여 더욱 피폐에 빠지게 방관함은 실로 유의자(有議者)로서 참을 수 없는 바라. 그러므로 국가의 예의(銳意)한 지도와 민간 유지(有志)의 성의 있는 원조하에서 산업의 근본적 시설과 발전을 계획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일본으로서 조선을 일본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할진대, 조선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발의 경역(境域)을 뒤따르도록 노력함이 일본 정부 및 일본 인민의 당연한 책무라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조선은 이미 과거의 조선이 아니요, 조선 민중도 공통적으로 각성한지라. 그런즉 이 기틀에 편승하여 조선의 산업 발달에 관한 정책과 방침을 정하고, 이 도정(道程)에 의하여 진행할 것 같으면, 반드시 사반공배(事半功倍)의 좋은 결과를 얻음이 용이할 것이다.

본 15일부터 총독부에서 개최하는 산업조사위원회 제1회는 일선인(日鮮人)의 실업가와 전문가 40명으로 조직하여 위원장 미즈노(水野) 정무총감의 주재하에 총독부 제2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는 회기□ 중축(仲縮)할 터

이러는데, 모두 이 기획은 조선개발의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확립하는 대규모의 것이라 할 것이다. 총독부에서는 이때에 아무쪼록 편견에 집착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세간(世間)의 비평과 희망과 의견을 모아 진정한 관민일치의 보조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회의에서는 총독부의 제안이 있고, 위원 측에서도 안건과 건의안이 종종 제출될 것이다. 지금에 먼저 총독부에서 제출할 대체의 안건을 소개하면,

- 산미의 개량과 증식에 관한 건
- 쌀 이외의 주요작물에 관한 건
- 양잠(養蠶)에 관한 건
- 축산에 관한 건
- 소농 보호에 관한 건
- 국유림의 경영에 관한 건
- 조림(造林)의 촉진에 관한 건
- 임야의 처분에 관한 건
- 수산의 조장(助長)에 관한 건
- 공업의 조장에 관한 건
- 일반공업의 조장에 관한 건
- 연료 및 동력에 관한 건
- 해운에 관한 건
- 철도정책에 관한 건
- 도로, 항만, 하천에 관한 건
- 금융에 관한 건

등이다. 이상 각종의 제안은 그 근본 정책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범위는 자못 광범하고, 여러 갈래에 걸쳐 있다. 무엇이든지 장래에 민간사업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인즉, 이것의 정책을 총독부에서 결정하여 이를 일반에게 강제하는 형식이 됨은 내가 취하는 바가 아니다.

요컨대 관□이나 민간이나 다 보조를 일치하여 조선 개발의 대목적으로 향하고 진행할 것이다. 의제(議題)의 선정 같은 것도 총독부의 제안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위원기타의 제안까지도 심의하기로 노력하여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위원의 발언 같은 것도 절대로 구속하지 말아서 어디까지나 기탄없고, 은정(隱情) 없고, 격태(隔怠) 없

는 의견과 비평과 희망을 들어야 할 것이다. 원래 본 조사회의 의안(議案)은 보통의 의안과 그 의의가 같지 않으니 각 산업기관으로부터 모은 의견서는 물론 조선민간유지의 의견도 채택하여 의안의 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여하간 본 조사회를 개최하는 근본 취지는 조선 산업의 정책과 방침을 확립하여 국민 일치로 조선의 개발을 전속력으로 촉진하고자 함과 같은즉, 실로 조선 산업정책의 신기원을 기획하는 때를 맞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려워니, 유래(由來)로 위정자가 조선의 개발에 노력하였다 하나 조선 민중에 대하여 하등 현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의연히 피폐함이 극에 달하여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였다. 의식(衣食)이 풍족한 후에야 예절(禮節)을 앞이라.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한 민중에게 어찌 문화 향상을 기대할 것인가. 위정자 및 위원 제씨(諸氏)여, 조선의 산업은 조선인의 손으로 개발하게 하라. 조선에 대한 사업은 조선인을 본위로 함에 유의하라. 예전에 전제식(專制式)의 정치는 민(民)은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필요는 없다 하였지만 현대의 정치는 민은 알게 할 뿐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함에 있을 뿐이다. 현재 조선 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시설에 대하여 나의 소견을 개진(開陣)하고자 하노라.

〈출전 : 朝鮮産業調査會開會에 際하여(사설), 『朝鮮日報』, 1921년 9월 15일〉

7) 조선인 산업대회 건의안

조선인 임시산업대회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9시에 집행위원 윤치호(尹致昊), 김치수(金致洙), 여병섭(呂柄燮), 김종범(金鐘範), 조종구(趙鐘九) 씨로 하여금 원회(圓會) 건의안을 산업조사위원장 미즈노(水野) 정무총감에게 제출케 하였는데 그 건의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견서

사람의 생활이 다방면이며 여러 가지 상태에 있으나 경제생활이 그 기초를 이루며, 사람의 요구가 복잡하여 불일치하나 경제적 요구가 그 근본을 규정함은 만인의 익히 경험

하는 바라. 부언이 필요하지 않거니와 문화의 발달과 사회의 관계가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권리를 요구하며 자유를 갈망하여 행복을 추구할 지라도 경제적 조건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는 전부 허황한 소망에 불과할지라. 경제의 능력을 결핍한 자가 어찌 국가로서 국제적 경쟁에 승리를 기하며 민족으로서 어찌 민족적 투쟁에 생존을 걸고, 개인으로서 어찌 사회에 그 번영을 바라리오. 대개 과학의 발달과 예술의 진보와 도덕의 향상 등 인생의 정화(精華)는 모두 경제적 조건을 기초하여 발달하는 것이라. 그 어찌 인생의 근본이 아니며 사회의 기초가 아니리오.

그러므로 가옥을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견고히 하며 인생의 발달을 도모하는 자는 그 경제적 조건을 충실히 하나니, 이제 조선인의 경제적 생활을 관찰하건대 그 전 호수(全戶數)에 대한 약 95퍼센트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이 농가에 대한 약 75퍼센트는 소작인의 곤궁한 실상에 있도다. 슬프다! 그것을 어찌 다 형언하여 논하리오. 그 인생을 고무장려(鼓舞獎勵)하여 원만한 문화의 열매를 맺게 하며 자유의 행복을 즐기게 하라 할진대 먼저 그 경제생활을 개선하여야 할지며 그 경제생활을 개선하려 할진대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지라. 이 시대는 생존경쟁이 격렬한 시대라 약육강식의 암담한 광경이 도처에 광출(廣出)하니 약자에 대하여 그 생존권을 보호하지 않으며 그 발달의 기회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어찌 양(羊)을 구하여 이리에게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겠는가. 이는 인류의 양심과 사회의 공의(公義)가 불허하는 바라. 이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 산업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요구하며 문화 발달을 목적으로 경제적 조건의 충실을 제창하나니 사회의 제일 되는 요구가 여기에 있으며 문화생활의 출발점이 여기에 존재하는 까닭이라.

사람이 그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면 필경 어려울 것은 지자(知者)를 대하여 비로소 알 바가 아니며, 사람이 그 생의 궁축(窮縮)을 당하면 필경 노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이미 증명하여 사람들이 훗날 아는 바라. 이러하므로 옛날 성왕(聖王)은 □□곤궁하면 대명(大命)이 끊어지리라 하였으며 철사(哲士)는 양생상사(養生喪死)에 무감(無感)이 왕도(王道)의 치(治)라 하였나니 경제는 인생의 제일 조건이요, 사회의 근본 기초이며, 문화의 출발점이라. 그 발달에 대한 보호방책을 어찌 소홀히 하리오.

이제 조선의 산업정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산업조사위원회가 개최됨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심(裏心)을 피력하여 소견을 개진하노니 바라건대 명찰(明察)할지어다.

건의안(강령)

1.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을 확립하되 소수 유산계급의 이익을 목적하지 말고 일반 다수 민중의 행복을 목표로 할 것.
2. 농업을 토대로 하여 상공업의 발달을 기하되 보호정책을 채용하여 경쟁의 참화를 제거할 것.

농업에 관하여

1. 치수, 소수(疏水) 및 관개사업을 왕성하게 하여 토지의 개간을 도모할 것.
 - 가. 토지개량기술관(土地改良技術官)을 증치할 것.
 - 나. 단체적 수리법(水利法)을 제정할 것.
 - 갑) 일정한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및 농업노동자로 하여금 공동 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수리에 관해 각 반의 설비를 행하게 하는 동시에 해당 단체로 하여금 용수, 기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만들게 할 것.
 - 을) 경비에 관하여는 국가가 적당히 보급할 것.
2. 권업기관을 확장하여 농업에 관한 일반 지식을 보급케 할 것.
 - 가. 일반농업학교, 동기(冬期)농업학교, 농업보통학교 등을 증설할 것.
 - 나. 권농 모범장을 증설하고 그 주지(主旨)를 철저하게 할 것.
 - 다. 일반 농업 관계자로 하여금 농회(農會)를 조직하게 하고 농업 발달에 관한 조사 및 시설을 행하게 할 것.
3. 소작인을 보호할 것.
 - 가. 소작인 조합법을 제정할 것.
 - 갑)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소작인으로 하여금 공동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토지생산력의 증진과 농산물의 개량을 도모하게 하는 동시에 지주와의 이익 분배 방법을 개선할 것.
 - 을) 생산물의 판매 및 비료, 기구, 기타 일상필요품의 구입을 공동적으로 행할 것.
 - 나. 법률로써 소작권의 적당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지위를 공고히 할 것.
 - 다. 법규로써 수확에 대한 소작료의 최고율을 정하여 이익 분배의 공평을 보장할 것.
 - 라. 소작인으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게 하고 그 토지의 수확물로서 연부상환(年賦償還)

- 하게 할 것.
- 마. 소작인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은행 또는 금융조합으로부터 대인(對人) 혹은 동산신용(動産信用)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하게 할 것.
 - 바. 관유지(官有地)를 널리 매각하는 경우에는 필히 그 토지의 소작인으로 하여금 이를 획득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게 하고 그 토지의 수확물로 연부상환케 할 것.
4. 특수금융기관을 증설하고 토지개량 및 개간 자금을 융통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저당권 신용을 확장하며 그 토지의 수확물로 장기에 의하여 연부상환케 할 것.
 5. 각 지방에 금융조합을 증설할 것.
 - 가. 조합원은 소농에 한할 것.
 - 나. 조합의 업무를 축소하고 소농에 한하여 대부할 것.
 - 다. 대인신용(對人信用)을 향상케 할 것.
 - 라. 운전자금(運轉資金)의 충실을 도모할 것.
 - 마. 이사(理事)는 각 지방의 신용 있는 조선인으로 충당할 것.
 6. 농업보험제를 설치할 것.
 - 가. 수해(水害), 한발(旱魃) 피해 및 상해(霜害) 등의 보험제를 만들 것.
 - 나. 가축 특히 우역(牛疫)의 보험제를 만들 것.
 7. 재면(裁棉) 및 양천(養蠶)을 장려하고 기타 부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할 것.
 8. 토지 및 곡류 가격의 격심한 변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당한 정책을 행할 것.
 9. 동양척식회사의 이민(移民)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하고 일본인 이민에 대한 제도를 조선 농민에게 적용할 것.
 - 가. 10년간 이주한 일본 농민 1만 5천여 명의 성적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일반 조선인의 악감(惡感)을 유발함이 극히 지대한 것.
 - 나. 일본 이민의 농작방법은 조선 농민에게 하등의 모범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이해상의 충돌, 관습상의 반목만을 초래할 것.
 - 다. 일본인 이주 농민의 1호당 경작지는 조선 농민의 경작지에 비하여 수배에 달하므로 조선 농민은 점차 그 농작지를 잃게 되는 것.
 10. 만주에 있는 조선 농민을 특별히 보호하여 그 생활을 안정하게 할 것.

산림업에 관하여

1. 조선인 기술자의 양성기관을 확장할 것.
2. 조선인 기술관의 수를 증가시키며 또 우대의 방법을 강구할 것.
3. 삼림시찰기관을 설립할 것.
4. 관영묘포를 증치할 것.
5. 종전 민유(民有)에 속하였던 산야로 관유(官有)에 편입된 자는 제한 없이 원소유자에게 환부할 것.
6. 국유산림의 대부(貸付), 광각(廣却) 및 그 산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지원주민(地元住民) 혹은 지원공공단체(地元公共團體)에 우선권을 주고 특수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케 할 것.
7. 국유산림으로부터 나오는 시초(柴草), 녹비(綠肥), 기타 부산물은 조건 없이 지원주민이 이용하게 할 것.
8. 산림대부(山林貸付)에 관한 수속을 간편하게 할 것.
9. 독지임업가(篤志林業家)에게도 포상 또는 보조금을 줄 것.
10. 화전(火田)을 정리하고 이로써 생활의 기본을 삼는 농민에 대하여는 생활 안정의 방도를 강구할 것.

공업에 관하여

1. 공업에 관한 교육기관을 증설하여 조선인의 기술을 향상시킬 것.
2. 각 공업지에 공업시험소를 설립하고 우량한 공업품에 대하여 포상을 행하며 또 공업자 각 반의 편리를 도모하게 할 것.
3. 공업·상공회를 설립하고 각 산업의 연결 및 발달을 도모할 것.
4. 각 수공업을 장려하여 그 발달을 도모하며, 또 동 조합을 설립하게 하고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게 할 것.
5. 기계공업의 발달을 조장하여 속히 자급자족의 방도를 강구할 것.
 - 가. 조선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품은 그 생산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를 도모할 것.
 - 나. 조선인의 경영하에 속한 공업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금을 보조해주어 그 완

전한 발달을 이루게 할 것.

6. 공장법을 제정하여 자본주와 노동자의 이익관계를 공평하게 할 것.
7. 흥업은행(興業銀行)과 공업적 경영으로 신용조합기관을 설립케 하여 공업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할 것.

상업에 대하여

1. 관세정책에 대하여는 보호정의(保護正義)를 채용할 것.
 - 가. 농업 및 공업에 관한 기계, 원료 기타 보조품의 수입세는 전폐할 것.
 - 나. 외국의 생산품으로서 조선의 생산품과 경쟁할 지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최고의 수입세를 부과할 것.
 - 다. 조선 생산품으로 외국 시장에서 외국 생산품과 경쟁할 지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수출세를 전폐할 것.
 - 라. 조선 생산품으로서 외국 시장에서 외국 생산품과 경쟁할 지위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품세를 부과할 것.
 - 마.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라도 외국에 대하는 것과 같이 보호정책을 적용할 것.
2. 상업교육에 관한 기관을 증설하여 상업상의 지식을 보급할 것.
3. 조선인 경영하에 속한 은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와 자금을 보조해주어 일반의 금융을 원활히 할 것.
4. 식산은행(殖産銀行)의 업무를 개량할 것.
 - 가. 신용과 지식이 있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그 지배의 임무를 맡게 할 것.
 - 나. 조선인을 본위로 영업하게 하여 조선인의 산업 계발을 도모하게 할 것.
5. 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일반의 저축심을 장려할 것.
6. 보험법을 제정하고 각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생존 및 각 산업의 위험을 확보할 것.
7. 경성, 기타 주요한 지방에 특히 조선인의 상업회의소를 설립할 것.
8. 여행증명의 규례를 폐지하여 조선인 상공업자의 일본 및 중국 등 지방에 대한 교통을 편리케 할 것.
9. 조선 및 만주에서 일본인 실업가들이 회의하는 경우에는 조선인 실업가도 참여하게 할 것.

광업에 관하여

1. 시굴(試掘)에 관한 규정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
 - 가. 시굴권 유효기간은 3개년으로 연장할 것.
 - 나. 시굴권 출원수수료(出願手数料) 및 시굴권등록세를 저렴하게 할 것.
 - 다. 시굴기간 중에는 광구세(鉉區稅)를 면제할 것.
2. 광업의 지도유역기관(指導誘掖機關)을 설치할 것.
3. 특수기관으로 하여금 광업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게 할 것.
4. 화약류의 구입, 사용 및 광석의 운수(運輸)에 대하여 특별한 편의를 도모할 것.

수산업에 관하여

1. 어업구의 허가에 대하여는 지원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
2. 지원주민으로 하여금 수산조합을 설립케 하고 특히 자금을 보조할 것.
3. 어선, 어구, 어법의 개량을 도모하며 어업자의 지식과 기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산학교를 설립할 것.
4. 조선 재래의 염업을 특별히 장려하여 발달을 도모할 것.
5. 판로의 확장을 도모하며 운수의 편리를 부여할 것.

교통에 관하여

1. 지방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속히 각지에 철도를 부설할 것.
2. 철도운수에 대하여는 임금의 저렴과 대우의 공평을 꾀하며 그 창고의 완비를 기할 것.
3. 철도기술원 양성 기관을 확장할 것.
4. 철도 고급 임원에 조선인을 포함시킬 것.
5. 도로의 완비를 기하되 지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하게 할 것.
6. 국고의 보조를 요하는 사설철도로서 그 업무에 우수한 자를 특히 독려(督勵)할 것.
7. 조반(造般), 항해, 의장(艤裝)의 장려금 제도를 설치하고 조선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것.
8. 운수의 신속과 공평을 기할 것.
9. 해운 양성소를 설립할 것.

산업단체 및 자금 융통에 관하여

1. 산업조합령을 발포하고 조합의 설치를 장려하여 자치적 산업의 개발을 도모할 것.
2. 산업조합에 대하여 자금융통의 특별한 편의를 도모할 것.

〈출전 : 朝鮮人産業大會建議案 『東亞日報』, 1921년 9월 16일〉

8) 횡설수설(기사)

▲ 산업조사위원회(産業調査委員會)는 예정과 같이 20일로써 종료하였다.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심의하였는지는 자세히 듣지 않아도 대개 추측할 바이나, 전 조선인의 여론을 대표한 조선인 산업대회 및 유민회(維民會)의 건의안은 어떠한 정도까지 존중되었는지 이는 문제라 한다. ▲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건대 당초 총독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민간의 여론이 있음을 무시하고 위원회에서 불문에 부치려 함인지, 회기가 반을 넘겨도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하등의 언급이 없었다 한다. ▲ 그러하니 건의안이 있음을 신문상으로 듣고 안 동경(東京)의 모 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문제 삼아 민론(民論)이 있으면 경청함이 당연하다고 제의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이 분분하였다. 산업대회 건의안 중에 동양척식주식회사 폐지의 조항이 있기 때문인지, 전 농상공부 장관이요, 현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總裁)인 이시즈카(石塚英藏)와 같은 이는 건의를 수리할 필요도 없다고 반대의 급선봉(急先鋒)이 되었다 한다. ▲ 그리하여 필경은 총독의 결재를 받게 되어, 총독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함도 양호하다는 회답을 준 결과, 19일 조선히에서 산업대회와 유민회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산업조사위원 등이 그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이라 한다. ▲ 민론의 채용은 고사하고, 총독부 당국자가 조선의 민론이라는 것을 당초부터 근본적으로 무시함이 아닌가 하는 감상은 이 일로도 더욱 심절해졌다. 무엇이 '민의창달(民意暢達)'인가, 이 성명을 증복하는 사이토(齋藤) 조선총독은 건재한가.

〈출전 : 橫說豎說 『東亞日報』, 1921년 9월 21일〉

9) 산업조사회 결의안

총독부 산업조사위원회 최종 회의는 20일 오후 2시 반부터 오전에 이어 개최하였다. 벽두에 답신안의 형식론에 취하여 제3부 주사령(主査鈴) 시카(木左島也) 씨와 이노우에(井上) 위원 간에 논의가 있는 후, 결의사항에 들어가 각 분과회로부터 제출한 결의안을 의제에 제공하여 별항 기재한 『조선 산업에 관한 일반방침(一般方針)』 이하 『조선 산업에 관한 시설요강(施設要綱)』을 의결하고, 다시 제2분과회에서 부대사항으로 결의한 건을 부의(附議)하여, 갑론을박으로 논의가 자못 비등하였으나 결국 총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진행 중 마츠야마(松山) 대의사(代議士), 마츠무라(松村) 법제국참사관(法制局參事官) 양 위원 간에 기술관대우문제에 관하여 격렬한 논전이 있은 후 구기모토(釘本) 위원으로부터 희망 안건으로 산업대박람회 개최의 건을 제창한 후, 사이토(齋藤) 총독 및 미즈노(水野) 정무총감의 일장의 연설이 있었다. 그 후 당국은 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히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이의 실행을 기할 터이나, 그 시기는 경중과 완급을 고려하고, 예산과 기타 재정적 관계 등으로 인하여 지금 시급히 이를 실시하기 불가능한 것도 있을 터인즉 이 점은 널리 이해를 청하는 취지를 진술하고 폐회하였는데 때는 정확히 오후 5시더라.

결의안(산업조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조선 산업에 관한 일반방침

조선의 산업상 계획은 제국 산업정책의 방침에 순응할 것을 기할지며 내외의 정세 특히 일본, 중국, 노령아시아(露領亞細亞) 등 인접 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찰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산업은 시정 이래로 진보의 성과가 현저하나, 그러나 그 진보는 필경 초창기에 속하여 그 기초가 오히려 박약(薄弱)하여 전도(前途) 발전의 요건에 결여한 바가 적지 않다 하노라. 그리하여 장래에 지식과 기능의 향상, 발달을 더욱 촉구하고 근면과 협동의 관습을 조장하여 산업 제반의 조직 및 교통, 통신의 기관을 정비하여, 자본력의 충실 및 금융의 소통을 도모하고 일본인과 조선인 및 일본과 조선의 관계연락을 한층 밀접케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조선 경제력의 진보와 일본과 조선의 공동의 복리 증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조선 산업에 관한 제반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는 이미 일본 및 인접지와의 관계, 조선 내부의 사정 및 재정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정하고 경중을 파악하여 완급을 안배할 것을 요하노라.

조선 산업에 관한 계획 요항

제1. 농업에 관한 건

1. 조선의 부력(富力)을 증진하고, 또 제국의 양식 충실에 공헌키 위하여 산미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2. 양식을 충실키 위하여 쌀 이외의 식용작물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3. 수출에 적합한 농산물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4. 조선내 공업의 소지(素地)를 배양하기 위하여 공업 원료에 적합한 농산물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5. 농가의 부업으로 잠업(蠶業)의 장려와 보급을 도모할 것.
6. 농업 노력을 충족하고, 또 식육(食肉)의 충실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소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할 것.
7. 조선에 적응한 말 및 면양의 종류시험을 행할 것.
8. 농업의 건실한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소작 관행을 개선하고 기타 소농 보호에 관한 시설을 행할 것.

제2. 임업에 관한 건

1. 목재 수급의 조절, 임리(林利)의 개발 및 지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임야의 관리와 경영을 통일하고 합리적인 시업(施業)을 행할 것.
2. 민유임야의 조림, 특히 황폐산야의 복구를 속성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행할 것.
3. 불요존임야(不要存林野)에 대하여는 조림의 촉진 및 연고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것.

제3. 수산업에 관한 건

1. 어획의 증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장의 보호 확장 및 어선과 어구의 개량과 증설을 촉진할 것.
2. 어리(漁利)의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어획물의 처리, 제조방법의 개량, 중대지(中 처支) 무역의 진흥을 도모할 것.

3. 어업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획물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어항의 수축(修築)에 노력할 것.
4. 수산업의 건실한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어민의 보호 및 수산단체의 개선과 발달을 도모할 것.

제4. 공업에 관한 건

1. 조선의 경제력 증진을 위하여 원료 및 생산의 소지를 가지고 조선 내의 수요, 또는 수이출에 적합한 공업품을 제조하는 공업의 발달을 도모할 것.
2. 공업의 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담의 경감, 원료의 공급, 노동 능률의 증진, 제조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원조를 할 것.
3. 소공업을 보호하고 그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것.

제5. 광업에 관한 건

1. 광업의 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질조사의 속진(速進) 및 생산비 경감의 방도를 강구할 것.
2. 광리(鑛利)의 보전, 조업의 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허제동(選鋸製鍊)의 보급과 개선에 노력할 것.
3. 노자(勞資)의 조화, 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갱부(坑夫)의 보호, 유액(誘掖)에 노력할 것.
4. 금광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유금산(保留金山)을 민간에 개방할 것.

제6. 연료 및 동력에 관한 건

1. 가정용 연료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탄자재(薪炭資材)의 증식 및 이용 개선을 도모할 것.
2. 연료 및 동력의 공급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연탄, 갈탄전(褐炭田)의 개발을 조장하고 이러한 석탄의 이용을 증진할 것.
3. 수력전기사업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요 하천의 수원(水源) 함양(涵養)에 노력하고 또 발전(發電) 수계(水系)를 탐사할 것.
4. 동력 통일에 관한 제반의 조사와 연구를 할 것.

제7. 산업자금에 관한 건

1. 조선의 산업을 진흥하고 유리(遺利)의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요하는 자금의 집적을 도모할 것.
2. 금융기관의 시설 개선을 계획하여 산업 자금의 보급과 유통을 기할 것.

제8. 해운시설에 관한 건

1. 중국 무역을 조장할 취지로써 상해(上海) 이북 제 요항(要港)에 대한 항로를 개척할 것.
2. 조선 치적선(置籍船)의 일본 연안 무역에 관하여 일본선과 같은 모양으로 할 방도를 개척할 것.

제9. 철도시설에 관한 건

1. 관사철도(官私鐵道)의 보급을 도모할 것.
2. 교통계통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선로망에 대해 조사를 행할 것.
3. 기성 철도의 개량과 기타 철도 이용에 관한 설비의 충실에 유의할 것.
4. 철도의 경영에 대해서는 조선의 산업 발달에 최선의 고려를 할 것.

제10. 도로, 항만, 하천에 관한 건

1. 도로의 보급을 도모할 것.
2. 기성 도로 구조물의 완비를 도모할 것.
3. 도로의 유지를 완전히 할 것.
4. 추요(樞要) 항만의 설비에 대하여는 점차 이의 완성을 기하고 기타 항만에 대하여는 방파(防波)와 기타 긴급한 시설을 조성할 것.
5. 하천은 목하 조사 중인즉 이의 완료를 기다려 근본적 계획을 세울 것이나, 시가방수(市街防水)와 같이 긴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하천의 전체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공사를 시작하고 상공업시설의 안전을 도모할 것.
6. 내륙수운의 이용을 도모할 것.

이상 외에 산업조사위원회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하여 그 의결을 거쳐 다시 위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농업에 관한 건

농업은 조선산업의 대종으로써 조선인구의 8할이 이에 종사하므로 이의 흥망은 직접 민중의 복리에 영향하는 바 크다. 고로 농업의 진작장려(振作獎勵)는 산업에 관한 계획 중 가장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농업에 관하여 금회 제출한 계획요항은 대체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의 시설의 진척을 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산미(産米)에 대하여는 경지의 확장개량 및 경종법(耕種法)의 개량과 같은, 미(米) 이외의 농작물에 대하여는 면화·과수의 재배 장려와 같은, 잠사업(蠶絲業)에 대하여는 양잠 호수의 증가와 같은, 축산에 대하여는 축우의 개량 증식과 같은, 또 소농보호에 대하여는 소작관행의 개선 및 부업의 장려와 같은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산미의 개량증식은 단지 농업 중에 있어서의 주요한 사항으로 그치지 않고 조선산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총독부의 산미증식에 관한 제1기 계획은 현재의 예정을 최저한도로 간주하고 철저한 수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 경지의 확장개량에 관한 기본조사의 속성
2.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증가
3. 토지개량사업의 축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설기관의 설치
4. 경종법의 개량에 관한 시설에 대하여는 특히 재원의 충실을 도모하여 계획 수행상 유감없이 기하기 바란다.

다음 사항은 계획요항 또는 같은 참고서 중에 특기(特記)를 결(缺)하나 산미개량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1. 개간·간척 또는 지목(地目) 변환에 관련한 토지의 초하년한(鋤下年限)을 적어도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할 것
2. 조선의 산미는 일본의 식량문제와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본에 있어서의 소류(消流)의 도(途)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고려할 것

임업에 관한 건

금회 제출한 계획요항에 기록된 각 사항은 어떤 것도 이의 없는 사항뿐으로 장래 이의 실시에 관하여 그 순서의 완급을 도모하고 실행방법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가능한 간소민첩을 본지(本旨)로 하여 실시됨이 족하다고 인정한다. 또 임업의 성쇠는 제반

산업에 심대한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황(林況)과 하천의 상태로서는 장래에 대하여 심히 근심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각종 산업의 근본사업으로서 속히 삼림 및 치수 양 사업의 진전을 기획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목적을 달성한 위에 다음 사항을 조사연구할 것을 바란다.

1. 임업 및 특정의 위치에 있어서의 치수사업의 조화병진(調和併進)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기관을 통일할 것
2. 국유림이 풍부한 지방에는 현행의 영림창지창(營林廠支廠)과 같은 것을 증가·확장하며 또는 각 도청에 삼림비(森林費) 지변(支辨)의 특설기관을 배치하여 국유림의 관리경영, 사방(砂防) 및 하천 공사와 민유림에 대한 행정을 행할 것
3. 치산치수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 사방 및 치수의 양 사업은 소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관영으로 할 것
4. 국유림의 존폐 구분에 대하여는 한층 주의를 기울여 장래에 대한 관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유감없도록 할 것
5. 현재의 관설(官設) 제재(製材)사업은 그 창설 당시와 취지를 달리하여 왔으므로 장래는 시기를 보아 폐지할 것
6. 임산물 처분 상에 관하여는 국유림 생산재의 자유처분과 임리증진(林利增進)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7. 화전정리(火田整理)에 관하여는 현재의 주민으로 하여금 다른 상당한 생업을 얻게 하는 등 온건하고 실질적 방법을 취할 것

〈출전 : 産業調査會決議案 『東亞日報』, 1921년 9월 22일 ;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10월 5일〉

10) 산업조사회의 결의안, 조선인 본위의 반대로 일본인 본위의 정책 (사설)

지난 20일에 폐회된 총독부 산업조사위원회의 결의안은 본보에 이미 보도한 바와 같

거니와 나는 종래에 동 회(會)에 대하여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을 확립하기를 요망하였노라. 이제 이 근본정신에 따라 동회의 결의안을 고찰하건대 나는 이 결의안이 우리의 요망, 환연하면 일반 조선인의 여론과 크게 모순됨을 간취하는 바라. 동 결의안은 벽두(劈頭)에 논하되 “조선의 산업상 계획은 제국 산업정책의 방침에 순응할 것을 기하라” 하고 경제 발달에 대하여는 “장래에 더욱 지식과 기능의 향상과 발달을 촉진하고 근면협동의 습관을 조장하여 산업 제반의 조직 및 교통, 통신의 기관을 정비하며, 자본력의 충실 및 금융의 소통을 도모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및 일본과 조선의 관계연락을 한층 밀접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하였다. 대체적으로 말하여, 경제 발달에 지식과 기능의 향상과 발달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근면협동의 습관을 양성하여 산업의 각반 조직을 정비함이 긴요함 또한 물론이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인의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에 관한 교육기관의 확장을 요구하였다. 자력 충실과 금융 융통에 관하여 조선인을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면, 환연하면 지식과 기능과 자력의 정도가 아직 저급한 조선인의 향상과 발달을 주요한 목표로 정하고 산업정책을 확립하지 아니하면, 결국 일본인과 조선인의 밀접한 관계연락은 고사하고, 상호 적대하는 계급으로 분립할 것은 도저히 면하지 못할 필연적인 사세(事勢)다. 원래 평화를 초래하는 밀접한 관계는 평등한 지위에서 연락을 취할 시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요, 불평등한 지위에서, 가령 농노와 농주와 같은 관계에서는 평화의 밀접한 연락을 희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밀접한 관계연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도저히 노예의 굴레를 탈피하지 못할 관계도 일종의 밀접한 관계이며, 상호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저히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도 또한 일종의 밀접한 연락이다. 전자는 동일한 밀접한 관계이나, 포학의 관계이며, 후자는 전자와 달리 평화와 환희의 관계라.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대하여 과(課)하는 밀접한 관계, 조선인에게 대하여 요망하는 연락은 명칭은 어떻든 실제로는 불평등의 연락이며, 노예의 밀접한 관계라 할지니, 일본인의 풍부한 자력과 우수한 지식으로써 빈약한 조선인에게 임하면, 그 귀결이 흑자의 말과 같이 하나는 차를 탄 귀객(貴客)이 되고, 하나는 차 아래 천부(賤夫)가 될 것이다. 이는 곧 융화하지 못하고, 상호 적대하는 계급으로 분립하는 것이며, 조선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필연의 귀결이라.

조선의 산업상 계획을 일본 산업방책에 순응하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일본의 양식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산미의 개량과 증식을 도모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고. 후자는 전자의 결론이요, 전자는 후자의 전제라 할지니, 요컨대 조선의 산업 개발은 조선인의 경제 발달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필요에 따라 양식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조선을 일본의 양식지(糧食地)로 만들 것이며, 또 원료를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조

선을 원료지로 만들 것이며, 일본인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이유를 불문하고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변화시킬 것이다. 조선인의 생존권은 둘째요, 그 제일은 일본인의 발전권(發展權)이로다. 또 소위 조선 산업정책은 일본 산업정책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니, 더 한층 적절히 그 주지를 척결(剔抉)하면, 일본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조선을 지배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철저히 조선을 일본에게 예속시키자는 것이다. 토지의 예속뿐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생활을 일본인의 생활에 예속시키자는 것이로다. 슬프다! 이는 기왕의 정책으로 볼 때 분명한 바라. 가없게도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을 희망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비웃음이 가하도다.

〈출전 : 産業調査會의 決議案, 朝鮮人 本位の 反對로 日本人 本位の 政策
『東亞日報』, 1921년 9월 23일〉

11) 조선 산업에 관한 일반 방침 및 계획에 대하여(1922)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니시무라 야스키치(西村保吉)

인류의 역사 이래 세계에 전쟁이 그쳤던 적은 없다. 고래(古來)로 고원(高遠)한 이상과 박애의 정신으로 가득 찬 수많은 학자, 정치가, 종교가는 끊임없는 인생의 참화를 절멸하고 인류공동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제 사회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일개인의 생존권은 학자, 정치가, 종교가의 수많은 공론(空論)보다도 심각하고 통절한 절대적이고 필지(必至)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5년간의 세계적 대전란은 더욱더 국제관계의 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약소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국가로서도 실제로 용이하지 않은 세계적 위협 아래 서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고, 또 이 위협에 대항하여 영구히 행복한 생존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결코 일시적인 감정이나 당면한 이해(利害)에 얽매여 대국(大局)적인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일본이 조선을 정복한 것이 아니며, 또한 조선이 일본을 정복한

것도 아니다. 일본과 조선이 완전히 결합하여 공동 노력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우리 상호의 완전한 공동생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도 4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일찍이 일본에게 그 문화를 수출할 정도의 국가였지만, 오랫동안 동양의 한 번 두리에 벽재(僻在)하여 학문, 정치, 경제 등 언제랄 것 없이 세계진보의 대세에 뒤처져, 국력은 쇠약하고 도저히 세계의 강국과 길항(拮抗)할 수 없다. 일본 역시 동양의 한 강국으로서 3천년 동안 거의 외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또한 유신 이래 서양의 문물을 수입하여 해마다 진보해 왔지만, 이를 세계열강과 비교하면 그 세력은 여전히 너무나 쇠약하여 도저히 고립하여 세계적 우승(優勝)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조선도 조선만으로는 절대로 영구한 독립과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일본도 일본만으로는 영구히 그 독립을 안전하게 하기 어려운 정세(情勢)이다. 일한 양국은 상호 간의 지위를 잘 고려하고, 평등의 지위로 서로 합동하며, 일본인과 조선인 전체의 공동 노력에 의해 점점 그 세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여 세계적 독립자존의 큰 목적을 관철하려 하는 것이다.

일한(日韓) 양국의 합동을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사정(事情)은 전혀 감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란(戰亂)의 결과는 점점 더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 지금이야말로 그 공동 노력에 의해 우리 국가의 권위와 실력을 향상,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화급한 일이 되었다. 우리는 결코 외견상피의 벽견(僻見)에 얽매이는 일 없이, 점점 나아가 철저하게 일한 합동의 참 뜻을 이해하고, 철두철미하게 서로 제휴, 협력하여 일본과 조선을 합일하는 신일본의 영구한 이상을 위하여 노력, 분투해야 한다.

오늘날의 국제 관계는 전적으로 실력의 문제이다. 가령 아무리 정의와 인도(人道)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해도, 실력 없는 국가의 주장은 마치 공포(空砲)와 같이 실제의 국제 사회에서는 아무런 권위도 갖지 않으며, 실력 없는 국가는 도저히 열국(列國) 사이에서 안전한 지위를 차지할 수 없으며, 항상 강국의 위협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는 바이다. 실력은 우리의 국토를 안전하게 보지(保持)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영구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절대유일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실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사람이요, 부(富)이다. 그 체력을 강건히 하여 지식과 품성이 탁월한 우수한 국민과, 국민의 근면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충실하고 풍부한 경제력은 국가의 실력을 구성하는 2대 요소이며, 이 두 가지는 결코 어느 하나가 모자라서는 안 된다. 국민의 지, 덕, 체를 발달시켜 그 질과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교육의 힘에 의지해야 하며, 국민의 자본을 증가하여 국가의 부력(富力)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산업의 발달진흥에 의지해야 한다. 교육의 진보와 산업의 발달은 국가의 실력을 증진하

는 근저이며, 두 가지는 모두 각성한 국민의 자각적인 분려(奮勵)와 국민적 노력에 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목적을 관철할 수 없다.

지금 조선 산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 (1) 경지는 현재 430만 정보(町步)의 기간지(既墾地)를 갖고 있고, 그 밖에 장래 경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간지(未墾地)는 약 100여 만 정보로 계산된다.(산록 경사지 81만 정보, 하변황무지 7만 정보, 간석지 20만 정보) 생산액은 14억 3천만 엔이고(1920년), 이것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12억 엔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1단보의 생산액은 아직 매우 적다.
- (2) 산림 단별은 1,600만 정보로 전체 면적의 약 7할 3분에 해당하며 세계 유수의 임업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오리나무 등 매우 유용한 수종(樹種)이 풍부하고, 수종의 다양함은 실로 700여 종에 이른다. 그러나 오랫동안 남벌(濫伐)로 황폐해진 결과 성림지(成林地)는 불과 1/3에 지나지 않으며, 기타 천연 치수림(稚樹林) 또는 황폐한 무림목지(無立木地)이고 천연자원이 아주 적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3) 해변의 연안은 9,300리의 길이에 걸쳐 있고, 대구, 청어, 도미, 명태, 고래, 전복, 새우, 조개류 등이 어획되어 종류의 다양함은 실로 200여 종에 이른다. 어획액은 약 7,100만 엔이고 1마일 평균 7,600 엔에 지나지 않아 충분히 발달할 여지가 있다.
- (4) 광물은 전도(全道)에 산재하며 금, 은, 납, 안티몬, 수은, 아연, 철, 텅스텐 등 다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연산액(年産額)은 2억 5천만 엔(1919년)이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여지가 있는 듯하다.
- (5) 공업은 최근 기계기구의 개량, 기술의 진보 등에 의해 생산이 현저히 증가하고 그 중 직물(織物), 주물(鑄物) 등 점차 면목을 개선하여 신공업 발흥의 기운이 점차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산업면에서 본 조선은 전술(前述)한 것처럼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으니, 일본인과 조선인은 노력하여 부원(富源)을 더욱 개발하고, 경제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산업의 개발을 위한 요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다음에 기재한 사항은 주요한 것이다.

- (1) 당 업자의 지능을 계발할 것.
- (2) 신진 학술을 응용할 것.
- (3) 기계기구의 개량을 촉진할 것.
- (4) 기술의 진보를 도모할 것.

(5) 공동사업의 발달을 촉진할 것.

(6) 근검역행(勤儉力行)의 풍습을 양성할 것.

산업에 관한 일은 각 지방에서 많은 국민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실행해 온 사업이므로 한편으로는 세계 진보의 대세에 순응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각 해당 지방의 민속을 참작, 노력하여 당 업자의 자각과 이해를 촉진하고, 천천히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견실한 진보를 도모해야 한다. 헛되이 사공(事功)을 받아들여 급격한 개량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의 식산(殖産) 사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형식에 구애되지 말 것.

(2) 사무를 간편하고 신속히 할 것.

(3) 민속을 참작할 것.

(4) 작은 일에 구애되지 말고 대국적 견지에서 일을 도모할 것.

(5) 법령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민중의 이해를 얻는 일에 중점을 둘 것.

개량이라고 하든 혁신이라고 하든 적어도 앞을 향해 사물의 진보, 발달을 도모하는 이상, 모든 일에 종래의 인습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개량과 진보를 바란다면 인습을 타파해야 한다. 만약 노력하며 사물의 개량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 인습을 타파하고, 그 폐단을 버리고 선(善)을 취하며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키워 나갈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요(要)는 그 시기와 방법과 정도의 여하에 있을 뿐이다.

본 부(府)에서 교육조사회 및 산업조사회를 개최하고 조선의 교육과 산업에 관한 근본방침과 이에 동반하는 계획의 요향을 정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2대 사업은 총독정치의 창시 이래 10여 년의 실험과 최근 시세(時勢)의 변천을 참고하여, 새롭게 일정한 방침을 확정하여 장래 관민이 나아갈 바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장래 교육 및 산업을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개발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건설적 시설의 기근(基根)에 새로운 기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시험적으로 산업에 관한 일반의 근본방침 및 실행계획의 요령을 약설(略說)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본방침

조선은 제국의 일부로서 조선의 산업은 제국 산업의 일부이다. 조선 산업의 개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일한병합의 본의(本義)에 따라, 한편으로 조선 자체의 개발을 주안으로 하여 조선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전체의 타산적 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 산업에 관한 제국의 국책에 순응하여 일본과 조선 전체의 공동 복리를 이룩해야 한다. 즉 공통의 대방침 아래에서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상호 협력하여 제국 산업 전체의 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선은 일본, 중국 및 러시아령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들 지방에 가장 근접해 있으므로, 주로 이들 근접 지방과의 경제관계에 유의하고 이들 지방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 종류의 선택 및 교통 거래의 개선, 발달 등을 도모해야 한다. 조선의 대외문제가 무엇보다도 이들 지방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도, 조선의 민도, 산업 발달의 정도 및 경제적 이해관계상 이들 근접 지방에 대해서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에서 대내적 관계에 대해서 시찰한바, 조선 자체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산업의 기초가 극히 박약하여 산업의 발달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각종 요건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지금은 시정 이래 창업의 초기이고 소위 백사다망(百事多忙)한 오늘날에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장래 조선 산업의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상, 결코 이를 등한히 할 수는 없다. 가령 일반적 방침이 최선 최량(最善最良)의 것이라고 해도,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이상 조선 산업의 발전을 진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요건은 두세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만, 기왕의 실험과 내외 4면의 정세에 비추어 조선의 현상에 있어서 가장 긴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음의 사항들이다.

- (1) 산업 제반의 조직을 정비할 것.
- (2) 근면한 공동의 관습을 조장(助長)할 것.
- (3) 지식 기능의 향상, 발달을 촉진할 것.
- (4) 교통, 통신의 기관을 정비할 것.
- (5) 자력(資力)의 충실 및 금융의 유통을 도모할 것.
- (6) 일본인과 조선인 및 일본과 조선 경제의 관계연락을 밀접히 할 것.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조선의 산업 제반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일본 및 인접 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대내적으로는 조선 내부의 현상을 개선하여 일반 생산의 진보 및 생산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순연한 내선일체의 발달과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조선과 조선인의 건실한 영구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 각종 산업에 대한 계획 요령

조선의 산업은 농업을 본위로 하여 왔기 때문에 총 인구의 약 8할 3분은 농업에 종사

하고 산액(産額)에서도 농업이 총 생산액의 약 8할을 점하는 상황이므로, 농업의 중요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세인 중에는 왕왕 일본과 조선 사이에 생산분업주의를 주장하고, 일본은 공업을 주로 하고, 조선은 공업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영구히 조선을 원료의 생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조사회의 결정을 거친 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채용하지 않고, 조선은 농업 본위이자 농업 적지(適地)이며 공업상으로도 전적으로 농업의 개발에 주력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의 발달에 유의하여 가급적 공업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선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 그 원료는 조선에서 생산되도록 노력하는 방침이 채용되었다. 즉 내선분업주의도 아니고 농업공중주의도 아닌 전적으로 농공병진주의이다. 농업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쌀로서, 쌀의 생산액은 조선 농업 생산액의 거의 반 이상을 점한다. 쌀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식료일 뿐만 아니라, 농가 경제에서 주요한 수입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성쇠소장은 바로 반도에서 주민생활의 안정 및 일반 경제의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계획에서 농업정책의 중심을 쌀 생산에 두고, 전적으로 주력을 경주하는 방침을 취한다. 쌀 생산의 개량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1) 종자의 갱신 (2) 토지의 개량 (3) 비료의 증시(增施) (4) 잡물, 그중에서도 돌의 제거이다.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는 먼저 식량작물생산의 개량과 충실을 도모하고, 기타 경작지는 공업원료 또는 수이출작물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종류의 작물을 생산하는 데 유의하고, 농가경제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데 주안을 둔다. 기타 가장 중요시되는 특정 문제는 면작(棉作), 양잠, 축산 등으로, 이들은 농가경제의 성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업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는 국유림의 통일, 민유림의 개선 및 황폐한 산림의 복구, 즉 사방조림(砂防造林)의 수행으로서 각종 조림(造林)을 통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인 조림 주목(主木)의 선정 및 경영방법의 합리적 통일을 이룬다.

수산업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는 어획의 증산을 도모하고 어획물을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어업자 및 기타 수산업자의 경제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안으로 하고, 각 관 계업자의 공동시설을 촉진하여 수산업의 발달의 기초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광업에 관하여 결정된 주요 항목은 금광업의 개폐 및 연료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전자에 관해서는 선광제련시험을, 후자를 위해서는 석탄의 조사 및 시험을 실행하는 것을 예정하여 최근에는 두 가지 모두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 전자는 제국산금정책상 중요한 문제이고 후자는 조선 공업의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이다.

공업에 관해서는 조선인의 특질, 조선 공업계의 현황 및 추세 등에 비추어 이전부터

현재 발달해 있는 또는 발달할 전망이 있는 가장 유리한 소규모 공업의 개량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장려하고 조장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공업 발달의 경과를 보면 생산 및 경영의 방법을 대규모로 조직하여 생산비의 절감, 품질의 통일, 능률의 증진 등을 도모해야 하는데, 사물의 발달에는 자연스러운 순서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상과 같은 방침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대공업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대공업에 대하여서는 개개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강구하기로 한다.

기타 산업 발달을 돕는 원인이 되는 철도, 도로, 수로, 항만, 우편, 전신, 전화, 자금 및 금융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어 대요(大要)는 별기(別記)한 계획서에 따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상은 산업조사위원 등의 결정을 거쳐 방침계획의 요점을 개설(概說)함에 지나지 않지만 가령 지상(紙上)의 방침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실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가 처음부터 소정의 방침을 기초로 하여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해도, 지방 일반 관민의 협동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장 절실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개량 또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당한 희생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조선 산업의 조직적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상은 관민 모두 충분히 각오하여 불건전한 인습을 타파하고, 폐단을 몰아내고, 선(善)을 좇아 일치, 협력하여 공동의 대목적을 수행할 결심을 해야 한다.

요컨대 조선의 산업은 앞으로 발달할 여지가 매우 많으므로 이를 조장하고 발달시켜 조선의 부력을 점점 증진하고, 조선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전체의 경제력을 향상하고, 그 생활의 안정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일반의 행복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가의 실력을 충실하게 하여 국가의 위엄과 권력을 확립하는 것의 요체로서, 첫째로 일본인과 조선인 상호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다.

〈출전 : 西村保吉, 朝鮮産業に關する一般方針及計畫, 『朝鮮』 91호, 1922년 10월, 9~17쪽〉

3. 조선식산은행

1) 조선식산은행령 개정(1924)

조선식산은행령 중 개정의 건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勅裁)를 얻어 이를 공포한다.

1924년 3월 19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령 제1호

조선식산은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30년」을 「50년」으로, 「20인」을 「10인」으로, 「지방금융조합」을 「금융조합」으로 개정한다.

제18조 주 「신채(新債)의 제1저당이 될 수 있을 때」를 「신채의 제1 저당이 될 수 있을 때 또는 선순위(先順位)의 저당권자가 조선식산은행에 구(舊)대부금액 및 신대부금액이 제20조의 제한을 넘지 않을 때」로 개정한다.

제26조 조선식산은행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조선총독이 인가한 유가증권의 응모, 인수 및 매입을 한다.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예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영업상의 여유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채권」을 「제5장 조선식산채권」으로 개정한다.

제30조 중 「10배」를 「15배」로, 「상법 제199조」를 「상법 제199조 및 제200조의 2」로 개정하고 동 조(同條)에 다음의 1항을 우가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신청증에 기재한 사채총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채를 성립하는 내용을 사채신청증에 기재했을 때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총액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3월 19일〉

2) 조선식산은행의 연혁과 임무

제1편 조선식산은행

제1장 설립의 연혁

조선식산은행 설립 이전의 산업신용

조선식산은행 설립 이전의 조선에서 산업신용은 농공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금융조합에 의해 취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금융조합은 상호조직인 신용조합이고 그 대출은 조합원으로 한정되며 또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대출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은 까닭에 널리 일반에게 있어 산업 각 방면의 금융은 주로 농공은행에서 취급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농공은행의 규모

그런데도 농공은행은 멀리 1906년에 설립되어 1917년 말에는 전 조선에 걸쳐 6개의 은행이 있고 45개의 지점을 거느리고 업무를 경영하고 있지만, 본래 그 규모가 매우 작아서 6개의 은행을 합해도 공칭(公稱)자본금은 겨우 260만 엔, 불입(拂入)자본금은 147만 엔, 채권발행고는 300만 엔에 지나지 않아 당시 미력하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매우 빨리 발달해 온 조선의 산업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부적당하여 이를 고쳐 하나의 큰 유력한 은행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은 관민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조선식산은행의 설립

이상과 같은 사정 때문에 조선총독은 1918년 6월 조선식산은행령을 발포하고 이어서 다수의 설립위원을 임명하고 동 위원은 1918년 10월 전 조선의 농공은행 전부를 합병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고 그 자본금 1천만 엔 안에서 종래의 농공은행 자본금에 초과하는 분은 일반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하여 이를 충당하였다. 당시 주식모집은 매우 호황이어서 응모신청 주수(柱數)는 모집 주수의 약 300배에 달한다.

여기에서 조선의 일반 산업에 대한 신용은 조선식산은행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이와 동시에 본행은 조선의 하층 금융기관인 다수의 금융조합에 대하여 사실상 중앙금고의 지위에 서서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하여 자금의 대출에 임하게 된다.

제2장 조직 및 관리

자본금 및 주식

조선식산은행은 주식회사이며 그 존립기한은 설립등기일로부터 100년으로 하고 조선총독의 인가를 거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자본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창립 당시 1천만 엔이었지만 1920년 2월의 주주총회에서 이를 3천만 엔으로 증액하고 이 자본금을 60만 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50엔으로 한다. 그중 20만 주는 창립 당시의 주식이며 이미 전액을 불입하고 남은 40만 주는 1/4의 불입을 완료했다. 즉 현재의 불입자본금은 1천5백만 엔이며, 출자주주는 8,326명이다.

본점 및 지점

조선식산은행은 본점을 조선 경성에 두고 지점 또는 파출소를 전 조선에 걸쳐 가장 중요한 지방에 설치한다. 그 수는 현재 57개소이며 그 밖에 도쿄와 오사카에 각각 사무소 1곳을 두었다. 채권의 발행과 기타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지점이나 파출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인천, 수원, 개성
충청북도	청주, 충주
충청남도	공주, 조치원, 대전, 논산, 강경
강원도	춘천, 철원, 강릉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이리, 정읍, 김제, 남원, 줄포
전라남도	광주, 목포, 여수, 벌교포, 영산포, 제주도, 송정리
경상북도	대구, 포항, 금천, 상주
경상남도	부산, 마산, 통영, 진주, 부산진, 신마산
황해도	해주, 사리원
평안남도	평양, 진남포, 안주
평안북도	의주, 신의주, 박천, 선천, 영변, 강계
함경남도	원산, 함흥, 북청, 원산리
함경북도	청진, 나남, 성진, 응기, 회녕

임원

조선식산은행의 중역은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 대표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으로 한다. 대표는 조선총독이 임명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거하는 2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임기는 대표 5년,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대표 및 이사는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는 경우, 다른 어떤 명칭을 갖거나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현재 중역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표	아리가 미츠도미(有賀光豊)
이사	사쿠라이(櫻井小一), 이시이(石井光雄), 후카오(深尾道怒), 모리 고이치(森悟一), 후작 박영효(朴泳孝)
감사	히로세(廣瀬滿正), 자작 윤덕영(尹德榮)

행원 및 용원(傭員)은 현재 1,156명이고 그중 341명은 본점에서, 815명은 지점에서 근무한다.

본점의 사무 분담

대표는 조선식산은행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대표를 보좌하여 업무를 분담하며, 감사는 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그리고 본점의 직무 조직은 다음과 같이 1실 14과로 구성되며, 각 과에 과장을 두어 해당 사무를 맡게 한다.

비서실, 인사과, 조사과, 검사과, 계산과, 서무과, 경리과, 영선(營繕)과, 산업금융과, 공공금융과, 기술과, 상업금융과, 심사과, 증권과, 저축과
위에서 비서실, 인사과 및 검사과는 대표에게 직속하며 기타 각 과는 이사가 분담하여

감독을 맡는다.

제3장 정부의 보호 및 감독

당 은행은 조선의 산업공공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의 특수사명을 갖는 반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호, 감독을 받고 또한 특권을 부여받아 업무의 경영상 유루(遺漏)가 없도록 한다. 이하 항을 나누어 대요(大要)를 설명한다.

채권 발행의 특권

당 은행이 사명으로 하는 금융은 성질상 저리(低利), 장기(長期)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 까닭에 보통의 예금으로 자원(資源)을 삼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당 은행은 일정 한도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특권을 인정받는데, 이 채권 발행에 의해 모집된 자금으로 산업 내지 공공금융에 충당한다. 채권의 세목(細目)에 관해서는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정부주주에 대한 배당면제

당 은행 주식 중 정부 소유에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15년간 따로 이익 배당을 면제받는다. 그리고 현재 소유주 수는 6,598주, 불입금액은 32만 9,900엔이다.

배당보증

또한 당 은행에 있어서 특별한 은전(恩典)으로 여겨지는 것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보증으로서, 당 은행의 이익배당금이 정부소유주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 연 7%에 이르렀을 때는 설립 초기의 말일로부터 5년을 한도로 이에 달하는 금액의 보급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특전에 의해 당 은행이 실제 보급을 받는 것은 창립 초기 및 그 다음 기만으로 하고 제3기 이후에는 전부 보급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이를 사퇴(辭退)한다.

자금 조달상의 원조

당 은행 채권의 발행에 대하여 항상 정부의 원조를 받는 것은 물론 당 은행이 특히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자원(資源)으로서 대장성(大藏省) 예금부에 당 은행 채권의 인수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특별한 원조를 받는 것으로 한다.

정부의 감독

당 은행은 정부의 보호를 받는 한편 정부의 엄밀한 감독 아래 있으며, 조선총독은 당 은행의 업무를 감독하고 당 은행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독의 인가를 받을 뿐 아니라 총독의 임명에 관련된 관리관의 감시 아래에서 그 업무의 경영이 매우 치밀하기를 기대한다.

(중략)

제2편 조선의 산업

제1장 조선식산은행의 사명

특수사명

조선식산은행이 조선식산은행령인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특별은행이라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다음은 당 은행이 이러한 창립 취지에 따라 조선의 식산흥업에 관한 자금의 공급에 임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히 조선총독부와 지방관현 사이에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우선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여 행정을 돕는 것과 함께 산업개발을 위하여 공헌하는 것으로 한다.

대출의 다방면

이로써 당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방면은 매우 광범하며 사업의 종류로 말하자면, 농업, 수산업, 공업, 운수교통업, 공공사업의 각종에 걸쳐 있다. 똑같이 농업에 있어서도 토지개량, 개간(開墾), 축제(築堤), 관개(灌溉), 배수, 양잠, 목축, 식림(植林) 등의 용도와 또 대출처는 개인 혼자 또는 개인의 연대에 머물지 않고 수리조합, 금융조합, 각종 산업단체, 공공단체 등에 이른다.

이상 서술한 각종 사업은 이미 상당한 발달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아직 유치한 지역에 있어서도 장래 개발의 여지가 아직 많고 이의 개발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조선의 산업금융을 주관하는 당행의 책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전기(前記)한 각종 사업과 조합 또는 단체의 상황을 다시 약술한다.

(하략)

〈출전 : 『朝鮮殖産銀行と朝鮮の産業』, 朝鮮殖産銀行 編, 1924년, 1~7쪽, 27~28쪽〉

3)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정관(1936)

1918년 7월 2일, 조선총독 인가

변경 (1918년 10월 1일, 1920년 3월 1일, 1924년 4월 23일, 1927년 9월 1일, 1930년 9월 30일, 1932년 2월 16일, 1933년 2월 22일, 1934년 2월 22일, 1936년 8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당 은행은 1918년 제령(制令) 제7호 조선식산은행령에 의해 설립하여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이라고 칭한다.

제2조 당 은행은 조선식산은행령에 의해 영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당 은행은 본점을 경성에 둔다.

제4조 당 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거나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해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당 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100년으로 한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당 은행의 공고(公告)는 조선총독부관보 및 신문에 신는다. 단, 공고하는 신문은 대표가 이를 선정하고 조선총독부관보에 공고한다.

제2장 자본금 및 주식

제7조 당 은행의 자본금은 3천만 엔으로 한다. 이를 60만 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50엔으로 한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 주 : 1920년 3월 1일, '1천만 엔을 '3천만 엔'으로, '20만주'를 '60만주'로 개정

제8조 당 은행의 주권은 기명(記名)식으로 한다.

제국 신민 또는 제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당 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정부 및 공공단체는 당 은행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제9조 당 은행의 주권(株券)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및 1,000주권의 4종으로 한다.

제10조 당 은행의 주식 중 63,597주는 농공은행령에 의해 설립된 농공은행의 주주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5엔 불입의 주식 4주, 10엔 불입의 주식 2주, 20엔 불입의 주식 1주에 각 1주를 할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정부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는 5주에 2주를 할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주금(株金) 제1회의 불입금액은 1주에 20엔으로 한다. 단, 증가자본금의 주금 제1회의 불입금액은 1주에 12엔 50전으로 한다.

* 주 : 1920년 3월 1일 '단, 증가자본금의 주금 제1회 불입금액은 1주에 12엔 50전으로 한다'의 단서를 추가

전 조(前條)에 의해 할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정부 소유의 주식은 전액, 그 이외의 주식은 제1회의 불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주주가 제1회의 주금을 불입할 때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이어서 주권(株券)으로 인환(引換)할 수 있다.

주금의 불입이 있을 때마다 주권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대표는 여기에 날인해야 한다.

제13조 주금 제2회 이후의 불입의 기일, 방법 및 금액은 영업의 형편에 따라 대표가 이를 정하고 적어도 2주 전에 그 요지를 각 주주에게 최고(催告)하고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단, 그 불입금액은 매회 1주에 10엔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한다.

증가자본금의 주금 제2회 이후의 불입금액은 매회 1주에 12엔 50전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한다.

* 주 : 1920년 3월 1일 '증가자본금의 주금 제2회 이후의 불입금액은 매회 1주에 12엔 50전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한다'의 1항을 제2항으로 추가

제14조 주주가 주금의 불입을 소홀히 할 때는 불입기일의 다음날부터 현 불입일까지 체납금에 대하여 100엔에 1일 4전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주주 및 그 법정대리인은 인감 및 주소를 당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

도 동일하게 한다. 단, 당 은행으로부터 인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한 증명을 청구할 때는 그 수속을 행해야 한다.

제16조 당 은행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권 이면(裏面)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여기에 연서(連署)한 명의서환(名義書換) 청구서를 첨부하여 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단, 상속, 유증(遺贈) 또는 경매 등에 의해 당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만 주권 이면에 기명날인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 항의 청구를 받을 경우 당 은행은 주주 명부에 기입의 수속을 행하고 그 주권 이면에 대표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환부해야 한다.

제17조 당 은행의 주권을 멸실(滅失)했을 때는 주주는 그 사유와 종류, 번호를 상세히 기입하여 당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 당 은행에 제출하고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 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당 은행은 신주권을 교부한다. 단, 멸실의 증적(證跡) 판명은 분실의 예를 따른다.

제18조 당 은행의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주주는 그 종류, 번호를 상세히 기입하여 그 내용을 당 은행에 제출하고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 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당 은행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당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 신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전 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이 해당 주권을 발견할 때는 바로 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당 은행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9조 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주권에 관하여 고장(故障)을 제기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당 은행은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신주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당 은행의 주권을 오염 또는 훼손했을 때는 주주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주권을 첨부하여 당 은행에 제출하고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당 은행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권의 종류 변경을 해야 한다.

제22조 당 은행은 주권의 명의서환의 경우에는 1통에 5전, 멸실, 분실, 도난, 오염, 훼손 또는 종류 변경에 따라 신주권 교부의 경우에는 1통에 20전의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다.

제23조 당 은행은 정기주주총회 전 1개월 이내에 주식의 양도로 인한 주권의 명의서환을 정지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한다.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할 수 있다.

제3장 중역

제24조 당 은행에 대표와 부대표 각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 주 : 1936년 8월 14일, '대표 1인'을 '대표와 부대표 각 1인'으로 개정

제25조 대표 및 부대표는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조선총독은 이를 임명한다.

* 주 : 1936년 8월 14일, '대표'를 '대표 및 부대표'로 개정

이사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2배수의 후보자를 선거하여 조선총독이 그중에서 임명한다.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있을 때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행한다.

* 주 : 1930년 9월 30일 제4항 중 「보궐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를 삭제
전 항의 주권은 본인이 퇴직해도 그 기간에 속하는 결산보고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이를 되찾을 수 없다.

제27조 대표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당 은행을 대표한다.
2. 대표는 법률, 명령 및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 및 중역회의 결의에 따라 당 은행 일체의 사무를 집행한다.
3. 대표는 주주총회 및 중역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28조 대표 사고 시는 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대표 결원(闕員)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주 : 1936년 8월 14일, '대표 사고 시는 이사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대표 결원 시는 이사의 호선(互選)에 의해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한다'를 위와 같이 개정

제29조 부대표 및 이사는 대표를 보좌한다. 대표의 명을 받아 당 은행의 업무를 분담한다.

* 주 : 1936년 8월 14일, '이사'를 '부대표 및 이사'로 개정

제30조 감사(監事)는 당 은행의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31조 대표, 부대표 및 이사의 보수연액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5천 엔
2. 부대표 4천 엔

3. 이사 1급 3천5백 엔

2급 3천 엔

감사의 보수액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대표, 부대표 및 이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액수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 : 1936년 8월 14일 제1항 및 제3항 중 '대표 및 이사'를 '대표, 부대표 및 이사'로 개정. 제1항 제1호의 다음에 '2 부대표 4천 엔'의 1호를 첨가하여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4장 증역회

제32조 증역회는 대표, 부대표 및 이사로 조직된다.

* 주 : 1936년 8월 14일, '대표 및 이사'를 '대표, 부대표 및 이사'로 개정

제33조 증역회는 당 은행의 중요한 업무를 의결한다.

제34조 증역회는 대표가 소집한다.

증역회는 회원 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다. 단, 회원 중 질병, 여행 및 기타 사고가 있어 정수(定數)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사안이 긴급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출석원이 결의하여 다음 증역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의사(議事)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5조 증역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결의록(決議錄)에 기재하고 출석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5장 주주총회

제36조 주주총회를 나누어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2종으로 한다.

제37조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개최한다. 일시와 장소 및 회의의 목적 등의 사항은 대표가 지정하여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시주주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개최하고 그 일시 및 장소는 대표가 정하여 회의의 목적 등의 사항과 함께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監事) 전원 또는 자본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총회의 목적 등 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書面)을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전 항 제2호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대표는 2주 이내에 소집 수속을 해야 한다.
- 제39조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한 주수(株數) 1주에 1개로 하고 11주 이상은 10주 증가시마다 1개를 추가한다.
- 제40조 주주는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은 다음으로 한정한다.
당 은행의 임원 및 사용인은 법정대리인인 경우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제41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정관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반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해야 한다.
- 제42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결의록에 기재하고 대표, 부대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 주 : 1936년 8월14일, '대표, 이사 및 감사'를 '대표, 부대표, 이사 및 감사'로 개정
- 제43조 주주총회출석명부는 대표, 부대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고 결의록에 붙여 철한다.
* 주 : 1936년 8월14일, '대표, 이사 및 감사'를 '대표, 부대표, 이사 및 감사'로 개정

제6장 영업

- 제44조 당 은행의 영업은 다음과 같다.
1. 50년 이내의 연부상환 또는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 대부한다.
 2.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해 어업권을 담보로 하여 대부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재단을 담보로 하여 제1호의 방법에 의해 대부한다.
 4. 농업자 또는 공업자 10인 이상이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해 무담보로 대부한다.
* 주 : 1924년 4월 23일, '20인'을 '10인'으로 개정
 5.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호의 방법에 의해 무담보로 대부한다.
 6. 금융조합, 어업조합,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관한 법인에 대하여

제1호의 방법에 의해 무담보로 대부한다.

* 주 : 1924년 5월 23일, '지방금융조합'을 '금융조합'으로 개정

7. 조선의 산물(産物) 또는 조선의 산업에 필요한 화물(貨物)을 담보로 하여 대부한다.
8. 국채증권 또는 조선총독이 인가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대부한다.
9. 환 및 화환(貨換) 어음을 취급한다.
10. 공공단체의 채권, 조선금융채권 또는 조선에서 식산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사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를 행한다.

* 주 : 1934년 2월22일, '공공단체의 채권' 다음에 '조선금융채권'을 첨가

11.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사업을 행한다.

12. 예금 및 지(地), 금, 은, 유가증권의 보호 예치를 한다.

전 항에 드는 대부로 상환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어음할인의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45조 조선식산은행령 제18조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구채(舊債)를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차주(借主)에게 교부한다. 이를 그 상환에 충당한다.

제46조 저당으로 징수한 건물의 보험은 모두 당 은행에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은 대부기한 중 계속되어야 한다.

제47조 상환기한 전에 연부상환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받는 경우에는 당 은행은 해당 상환금액의 2/100 이내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천재(天災)나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한 기한 전 상환을 받는 경우는 이와 상관없다.

제44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드는 법인에서 기한 전 상환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전 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주 : 1927년 9월 1일 제1항 단서, '단, 천재나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한 또는 제44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드는 법인에서 기한 전 상환을 받는 경우는 이와 상관없다'에서 '또는 제44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드는 법인에서'를 삭제하고 '제44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드는 법인에서 기한 전 상환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전 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제2항으로 하여 추가

제48조 당 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른 은행 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해 대부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 은행은 채무자를 위해 그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제49조 당 은행은 공공단체를 위해 금전출납을 취급할 수 있다.

제50조 당 은행은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건(物件)을 취득하거나 또는 채무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51조 당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 은행의 중역 및 사용인에 대하여 대부를 할 수 없다.

제7장 조선식산채권

* 주 : 1924년 4월 23일, '제7장 채권'을 '제7장 조선식산채권'으로 개정

제52조 당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권면(券面) 금액을 10엔 이상으로 하고 이찰(利札)부 무기명으로 한다. 단,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기명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 채권의 발행고는 불입자본금고의 15배로 제한한다. 단, 발행 현재고는 연부상환 대부금총고, 정기상환대부금총고 및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응모 또는 인수한 채권 및 회사채권 현재고를 초과할 수 없다.

* 주 : 1924년 4월 23일, '10배'를 '15배'로 개정

차환(借換)을 위해 저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 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54조 당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5조 채권의 이자는 매년 2회 이찰(利札) 인환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56조 채권의 상환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주 : 1936년 8월 14일, '정해야 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개정

채권의 상환기한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50년 이내로 한다.

* 주 : 1924년 4월 23일, '30년'을 '50년'으로, 1936년 8월 14일, '거치기간 경과 후'를 '거치기간을 포함해'로 개정

제57조 당 은행에서 권면 금액 20엔 이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매출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는 매출기간 및 상법 제20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드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주 : 1936년 8월 14일 제57조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미리 이를 공고한다'를 위와 같이 개정

제58조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기명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 당 은행은 기명채권의 명의서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통에 5전, 기명채권을 무기명으로 무기명 채권을 기명으로 서환을 하는 경우 또는 멸실·분실·도난·오염 또는 훼손에 의한 신채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1통에 20전의 수수료를 청구인에게서 징수한다.

제8장 계산

제60조 당 은행은 영업연도를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및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매 영업연도의 마지막에 대표는 모든 계정을 결산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및 이익금 분배안을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제61조 이익금분배의 방법은 총이익금에서 영업비와 기타 제반 비용 및 제반 손실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익으로 하여 다음의 비율로 분배한다.

1. 이익금 8/100 이상 결손보전준비금
2. 이익금 2/100 이상 배당평균준비금
3. 이익금(전기 조월금을 공제한 것) 10/100 이내 임원상여금 및 교제비
4. 이익금 안에서 앞 3호의 금액을 뺀 잔액은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특별채입금 또는 후기 조월금으로 한다.

제62조 당 은행의 이익배당금이 정부 소유의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 연 7/100 비율에 도달할 때는 설립 초기의 말일부터 5년간을 제한하여 이에 달하는 금액의 보급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한다. 단, 그 액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자본액에 대하여 연 7/100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 정부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는 설립 초기부터 15년간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마지막 5년간은 그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손보전준비금으로 편입한다.

제64조 당 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후 주주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이익금의 배당은 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당일 현재의 주주에게 지불한다.
배당금 지불의 기일 및 장소는 대표가 정하여 주주에게 통지한다.

부칙

제65조 설립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당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금액은 5만 엔 이내로 한다.

* 주 : 1918년 10월 1일, '3만 엔'을 '5만 엔'으로 개정

제66조 당 은행은 설립일에 농공은행에 있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7조 당 은행은 당분간 조선총독의 지정에 의해 보통은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8조 당 은행은 고문 및 상담역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상담역은 대표가 이를 촉탁하며 그 원수(員數) 및 사금(謝金)은 대표가 지정한다.

* 주 : 1930년 9월 30일 제1항 중 '당 은행은'의 다음에 '고문 및'을 첨가하고 제2항 '상담역은'을 '고문 및 상담역은'으로 개정)

제69조 당 은행자본금 중 2천만 엔은 1920년 2월 24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증가하고 그 증가자본금 중 50만 엔에 대한 주식 1만 주는 액면 이상의 가격으로 발행한다.

* 주 : 1920년 3월 1일 제69조를 추가

제70조 조선부동산용자 및 손실보상령에 의한 자금의 융통 및 그 융통을 위해 필요한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동령(同令) 또는 동령에 기초하여 발하는 명령에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것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 : 1933년 2월 22일 제70조를 추가

〈출전 :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本田秀夫 編, 1938년, 33~46쪽〉

4) 조선식산은행 간부

제3절 중역

당 은행의 중역은 조선식산은행령이 지정하는 바에 의해 대표, 부대표, 이사 및 감사이며 그 정원은 대표, 부대표 각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이다. 설립 당시에는 부대표의 지정은 없었지만, 영업과 거래가 증대함에 따라 1936년 8월 새롭게 부대표제를 신설하고 이사 와타나베(渡邊彌幸) 씨를 초대 부대표로 승임(昇任)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표 및 부대표는 조선총독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5년이다. 또한 이사는 50주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거한 2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는 자이며, 그 임기는 4년이다. 또한 감사는 3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대표는 일체의 업무에 대해 은행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 중역회,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지만, 사고 시는 부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대리하고 대표 결원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외에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대표, 부대표, 이사는 정관을 기초로 하여 중역회를 조직하고 의결하지만, 기타 업무에 관해서는 부대표 및 이사는 대표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또 감사는 당 은행의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대표, 부대표, 이사의 지위는 이와 같이 중요하므로 이들 직책에 있는 자는 어떤 명칭을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허하지만,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임 중역은 다음과 같다.

대표 히로세(廣瀨)	1937년 10월 30일 임명
부대표 와타나베(渡邊彌幸)	1936년 8월 14일 임명
이사 가네코(金子隆三)	1936년 8월 14일 임명
이사 야마구치(山口重正)	1937년 8월 15일 임명
이사 도미나가(富永文一)	1937년 8월 15일 임명
이사 마츠이(松井彦治郎)	1938년 8월 15일 임명
감사 하라(原邦造)	1928년 10월 1일 취임, 이후 중임(重任) 5회
감사 신(進辰馬)	1935년 2월 15일 취임, 1937년 2월 15일 중임
감사 나카도미(中富計太)	1938년 8월 15일 취임

또한 창립 이래 대표, 이사 또는 감사의 직에 있었던 모든 인사는 23명인데 그 지위와 성명을 취, 퇴임 연월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중 이사인 와타나베 씨는 현재 부대표직에 있다.

지위	성명	초임	퇴임	비고
대표	三島太郎 有賀光豊	1918년 10월 1일 1920년 7월 2일	1920년 6월 26일 1937년 10월 30일	1925/1930/1935년 각 7월 2일 중임
이사	有賀光豊 中村光吉 櫻井小一 侯爵朴泳孝 石井光雄 深尾道恕 森悟一 矢鍋永三郎	1918년 10월 1일 1918년 10월 1일 1918년 10월 1일 1918년 10월 1일 1920년 8월 27일 1921년 8월 23일 1923년 8월 18일 1925년 8월 24일	1920년 7월 2일 1923년 7월 11일 1926년 7월 26일 1930년 10월 1일 1927년 2월 5일 1925년 7월 28일 1930년 10월 1일 1933년 7월 18일	대표 三島太郎 사거(死去)로 1920년 6월 26일부터 동년 7월 2일까지 대표 직무 수행 1922년 10월 1일 중임 1922년 10월 1일 중임 1922/1926년 10월 중임 1922/1926년 10월 중임 1926년 10월 1일 중임 1929 8월 24일 중임
이사	高久敏男 渡邊彌幸 植野勳 伊森明治 林茂樹 水間美繼 野田新吾	1927년 2월 28일 1929년 2월 25일 1929년 2월 25일 1930년 10월 1일 1933년 8월 15일 1933년 8월 15일 1934년 8월 15일	1930년 10월 1일 1936년 8월 14일 1936년 3월 23일 1934년 7월 13일 1937년 6월 1일 1937년 8월 14일 1938년 7월 15일	1933년 2월 25일 중임 1933년 2월 25일 중임
감사	廣瀨滿正 男爵李根湘 子爵尹德榮 釘本藤次郎 山本好造 古城菅堂 菊池一徳	1918년 10월 1일 1918년 10월 1일 1920년 2월 24일 1928년 8월 17일 1930년 10월 1일 1933년 2월 15일 1934년 8월 15일	1928년 10월 1일 1936년 8월 14일 1936년 3월 23일 1934년 7월 13일 1937년 6월 1일 1937년 8월 14일 1938년 7월 15일	1920/1922/1924/1926년 각 10월 1일 중임 1920/1922/1924/1926/1928년 각 10월 1일 중임 1930/1932년 각 8월 17일 중임 1932년 10월 1일 중임 1936년 8월 14일 중임

그리고 도쿄 출장원사무소 및 오사카 지점은 당행 채권의 발행, 기타 자금 조종(操縱)상의 요지에 소재함으로써 이사 주재의 제도를 설정하고 다음의 인사들이 주재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다.

도쿄 출장원사무소

이시이(石井光雄) 1920년 8월 27일부터 1927년 2월 5일까지 주재
와타나베(渡邊彌幸) 1929년 2월 25일부터 1936년 8월 10일까지 주재
가네코(金子隆三) 1936년 8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오사카 지점

미즈마(水間美繼) 1934년 8월 31일부터 1937년 8월 14일까지 주재

마츠이(松井彦治郎) 1938년 8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제4절 고문 및 상담역(相談役)

고문 및 상담역은 모두 당행 정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가 이를 촉탁하는 자로 한다.

고문

고문제도는 1930년 9월 정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생긴 것으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당행의 경영에 관여하여 특히 공로가 현저한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를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다음의 3명이 재임 중이다.

전이사 후작 박영효(朴泳孝) 씨 1930년 10월 1일 촉탁

전감사 자작 윤덕영(尹德榮) 씨 1930년 10월 1일 촉탁

전대표 아리가(有賀光豊) 씨 1937년 11월 15일 촉탁

상담역

상담역 제도는 고문 제도보다 오래된 당 은행 성립과 동시에 정관에 의해 인정된 것이고, 대표의 촉탁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은행의 창립이 농공은행의 합병에 의해 시작된 까닭에 구(舊)농공은행 중역에게 이를 촉탁했던 것이고, 영업상의 자문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다. 상담역의 원수(員數)는 당 은행 설립 당초에는 38명이었지만, 사망과 기타 이유로 21명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17명이 재임이며 그 성명과 전직 등은 다음과 같다.

상담역 일람표(1937년 말 현재)

성명	주소	전직(前職)	비고
백완적(白完燦)	경성부	한호농공은행 이사, 은행장	
백인기(白寅基)	동상(同上)	동상(同上), 이사	
조병택(趙秉澤)	동상	동상	1924년 9월 7일 사거(死去)
조진태(趙鎭泰)	동상	동상	1933년 12월 17일 사거
주성근(朱性根)	동상	동상	1922년 11월 7일 사거
김용태(金容泰)	동상	동상, 감사	
김한규(金漢奎)	동상	동상	
이진태(李鎭泰)	평양부	평안농공은행 이사, 은행장	
김영택(金泳澤)	황해도 해주군	동상, 이사	
윤성운(尹聖運)	평양부	동상	
임우돈(林祐敦)	진남포부	동상	
이명환(李明煥)	평안북도 의주군	동상, 감사	1931년 3월 29일 사거
유광조(劉光祚)	평안남도 안주군	동상	1933년 1월 21일 사거
이병학(李柄學)	대구부	경성농공은행 이사, 은행장	
이종면(李宗勉)	동상	동상, 이사	1932년 6월 19일 사거
김기태(金琪邰)	경상남도 진주군	동상	
서병조(徐丙朝)	대구부	동상	
윤상태(尹相泰)	경상북도 달성군	동상	
정재학(鄭在學)	대구부	동상, 감사	
강위수(姜渭秀)	경상남도 진주군	동상	
박영근(朴永根)	전주부	전주농공은행 이사, 은행장	1934년 8월 17일 의원해직
박기순(朴基順)	동상	동상, 이사	1935년 9월 30일 사거
백남신(白南信)	동상	동상	1919년 12월 25일 의원해직
이강원(李康元)	동상	동상	
김도홍(金道弘)	동상	동상	1924년 6월 8일 사거
심태무(辛泰弼)	동상	동상, 감사	1921년 2월 2일 사거
김준희(金駿熙)	전라북도 김제군	동상	1934년 2월 4일 사거
김형옥(金衡玉)	광주부	광주농공은행 이사, 은행장	1937년 5월 4일 사거
정낙교(鄭洛敎)	동상	동상, 이사	
박하준(朴夏駿)	전라남도 광산군	동상	
현기봉(玄基奉)	목포부	동상	1924년 7월 7일 사거
이내래(李萊來)	전라남도 보성군	동상, 감사	1934년 2월 12일 사거

정병현(鄭丙鉉)	동상 광산군	동상	1920년 6월 21일 의원해직
이택현(李澤鉉)	원산부	함경농공은행 이사, 은행장	1929년 5월 25일 사거
김병유(金秉有)	동상	동상, 이사	1929년 5월 27일 사거
김충희(金忠熙)	함흥부	동상	
송덕수(宋德綏)	함경북도 경성군	동상, 감사	1921년 4월 5일 의원해직
전진호(全珍鎬)	함경남도 북청군	동상	1937년 6월 25일 사거

고문 및 상담역의 인사들은 구농공은행 또는 당 은행의 중역으로서, 또는 예의 농공은행경영의 중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행 발전의 기초를 배양하고 당 은행의 중역으로서 수십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힘써 일함으로써 경영과 은행 운영에 현저한 발전을 가져오고, 당 은행이 조선 경제의 핵심으로서 개발자금의 공급에 유감없이 공헌할 수 있는 기초의 수립에 노력해 온 사람들로서 명망가인 것은 물론이요 확고한 신용을 가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당 은행이 설립 이래 조선 재주민의 이해를 얻어 오늘날의 성운(盛運)을 맞이하는 데 이른 것은 모두 이들 인사들에 힘입은 바 크다고 믿는다.

〈출전 :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本田秀夫 編, 1938년, 262~269쪽〉

4.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1) 토지개량사업 합병조건 발표(기사)

- 토지개량사업 합병조건 발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대행 폐지

나카무라(中村) 토지개량부장 담(談)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에서는 관원(管原) 총재(總裁) 취임 후 사업의 쇄신에 관하여 강구 중이더니 토지개량사업의 대행 업무는 현재 대행 중인 것이 완료되면 이를 폐지하고,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금융 업무는 종래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본래의 사명을 완전히 하고자 다른 중요 시설에 전념함이 마땅하다 하여 이번에 토지개량회사(土地改良會社)와 협의한 결과, 연명으로 총독부에 대하여 개요는 다음과 같음.

승인과 신고가 있었으므로 총독부에서도 토지개량사업의 대행 업무의 현상 및 장래에 대하여 신중고구(慎重考究)한 결과, 이를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에서만 취급케 하는 것이 본 업무의 통제상 편리하고, 사업합리화의 정신에도 적당하며, 또 이후 한층 그 완벽을 기하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금일 승인의 지령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토지개량사업 대행기관 통일의 실현을 이루었다.

- (1)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32년 6월 말일로써 대행 업무를 폐지함.
- (2)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현재 측량, 설계 대행 중인 것은 1932년 6월 말일까지 완료하고 이 공사감독은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에서 행함.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이미 설계를 인도한 것이나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역시 동일함.
- (3)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이미 측량, 설계 대행을 할당받은 것과, 대행 계약 미체결의 것도 전부 할당을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에서 인수함.
- (4)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현재 공사감독 대행 중인 것은 동 사(社)에서 이를 계속하고 1932년 6월 말일에 완료함.
- (5)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개량부의 직원은 원칙으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에서 인계함.

〈출전 : 土地改良事業 合併條件 發表, 『東亞日報』, 1931년 7월 28일〉

2)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설립 취의서(趣意書) 및 정관

[2-1]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설립 취의서

조선에서 산미증산계획은 그 제1기 사업이 1926년 후 12개년으로 하며 일반 경종법(耕種法)의 개선 이외에 3억 3백여 만 엔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총 면적 35만 정보에 대한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성금, 인건비 등의 예산은 이미 제51의회에서 가결 확정되었고, 또한 이 사업자금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저리자금을 알선받음으로써 이제 본 사업은 앞으로 실행의 제1보를 내딛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 수리 개간, 간척 등의 토지개량사업은 일본과는 그 내용이 매우 다르다. 계획은 대부분 대규모로, 1구역이 종종 수천 정보에 이르고 공사비도 수백만 엔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토지개량사업의 성공을 확보하고 산미증식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조사 및 설계, 공사의 감사 등에 대하여 특히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 사업주체인 수리조합, 기타 기업가 개개에 대하여 이러한 시설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산미증식계획의 갱신을 기회로 하여 종래 조선의 수리사업에 관계했던 실재가를 망라하는 하나의 토지개량회사의 설립을 종용(從用), 원조한다. 이것이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본 회사는 바로 서상(敍上) 정부의 방침에 기초하여 별지(別紙)의 견적에 따라 이를 설립하여 실로 국책상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기본인 전기(前記)한 35만 정보의 토지와 종래 조선총독부의 면밀한 조사에 의해 선정된 80만 정보의 개량사업 후보지 중 사업이 가장 용이하고 채산성이 높은 제1등지만을 선발하여 개량사업시행지로서 실로 절대 우월한 조건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금의 반은 대장성 예금부로부터 융통하고 나머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조달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저리(低利)로 소요자금의 융통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사업소지가 있는 사업자금이 준비된 이상 해당 사업의 흥기(興起)는 당연한 것이다. 본 회사의 업무는 다시 환기하자면 별지 견적에서 가장 확실하고 타산성이 있는 것을 기초로 매년 8,400정보와 이 공사비 약 500만 엔의 수리조합사업에 대한 측량설계, 공사감독 기타를 대행한다. 동시에 면적 3,000정보와 이 공사비 310만 엔

의 개간 간척 및 이에 따르는 수리사업을 대행한다.

1926년 5월 발기인 일동

(별지 견적서 생략)

[2-2]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정관(定款)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사는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사는 수리조합, 기타의 위탁을 받아 토지개량사업을 집행하며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사의 자본 총액은 금 500만 엔이다.

제4조 본 회사는 본점을 경성에 둔다.

제5조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50년이다.

제6조 본 회사의 공고는 관할재판소가 상업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는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2장 주식

제7조 본 회사의 주식은 총 주수를 1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50엔으로 한다.

제8조 본 회사의 주권(株券)은 기명식으로 하며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의 4종으로 한다.

제9조 본 회사의 주권에는 사명(社名), 등기연월일, 자본총액, 1주의 금액, 불입금액, 주권의 종류 및 번호를 기재하며 취체역 회장은 이를 기명날인한다.

제10조 주금(株金)의 불입은 제1회의 불입금액을 1주에 금 12엔 50전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불입금액 및 기일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제11조 불입기일에 주금의 불입을 하지 못한 자는 불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금 100엔에 1일 금 4전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 제12조 주식 인수인이 제1회 주금 불입기일까지 그 불입을 하지 못했을 때는 15일 이내에 불입해야 하며 기한에 이르러 다시 불입하지 못했을 때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전에 불입한 증거금을 환부하지 않는다.
- 제13조 주주가 제2회 이후의 주금 불입기일 후 15일을 경과하여 불입하지 않은 때는 15일 이내에 불입해야 하며 기한에 이르러 불입하지 못한 때는 주주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했을 때는 주식의 각 양도인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불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고(催告)를 발하고 가장 먼저 체납금액을 불입한 양도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양도인이 불입을 하지 않은 때는 주식을 경매에 붙이고 이를 통해 얻은 금액이 체납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종전의 주주로 그 부족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만약 종전의 주주가 2주 이내에 이를 변제하지 않을 때는 양도인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도록 한다.
- 제14조 전 조에 정해진 양도인의 책임은 양도를 주주명부에 기재한 후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 회사와 기타 법인이 주주일 때는 대표자를 정해 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주식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실행하는 자 1명을 정해야 한다.
 공유자는 연대하여 주식대금 불입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한다.
- 제16조 주주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주식을 취득할 때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이 있을 때도 이와 같다.
- 제17조 본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부터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의 도달에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주는 그 도달에 10일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소를 정해 이를 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 항의 제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다른 주주에 대한 것과 동시에 발함으로써 충분하다.

- 제18조 주식을 양도할 때는 본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해 당사자 연서의 서면으로써 주권의 명의서환을 청구해야 한다.
상속, 유증(遺贈), 기타의 사유로 인해 주식을 취득한 때는 호적리(戶籍吏)의 증명과 기타 본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본 회사 소정의 서식에 따라 주권의 명의서환을 청구해야 한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본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 제19조 주권을 상실한 자가 신주권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밝히고 또한 본 회사가 인정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 항의 청구가 있을 때는 청구자의 비용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최종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신주권을 교부한다.
- 제20조 주권의 훼손 또는 종류 변경을 위해 신주권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청구서에 구(舊)주권을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다.
- 제21조 주권의 명의서환, 신주권의 교부 및 주권의 종류 변경에 대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22조 본 회사는 정시총회 전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로 인한 주권의 명의서환을 정지한다.
본 회사는 임시총회 전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주권의 명의서환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한다.

제3장 주주총회

- 제23조 주주총회는 정시총회 및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정시총회는 매년 1월과 7월, 임시총회는 이사 또는 감사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자본이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총회의 목적 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그 소집을 청구한 때 이사회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총회의 의사(議事)는 미리 통지한 목적 및 사항 이외의 것도 다를 수 있다.
- 제25조 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장이 지정하여 적어도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총회의 의장의 직무는 이사회장이 이를 실행한다. 단, 회장 사고 시는 전무이사, 전무이사 사고 시는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 제27조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 주수 1주에 1개로 한다.
- 제28조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를 다른 출석주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그 위임장을 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제29조 총회의 의장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 제30조 총회의 결의는 상법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전 항의 경우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1조 총회의사의 요항은 총회결의록에 기재하고 의장은 총회에 출석한 임원과 함께 기명날인한다.
- 제32조 총회의 의장은 회의를 연장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연기된 회의의 의사(議事)는 이전 회의에서 의사 종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다.

제4장 임원

- 제33조 본 회사에 이사 8명 이내, 감사역 4명 이내를 둔다.
- 제34조 이사는 300주 이상, 감사역은 2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선임한다.
- 제35조 이사 또는 감사역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원을 선임한다. 단, 법정 원수(員數)를 결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는 차기 총회까지 그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 제36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선거에 의해 취임한 이사 또는 감사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 항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시총회 종결 전에 만료할 때는 그 정시총회의 종결까지로 연장한다.
- 제37조 이사는 호선(互選)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2명, 상무이사 1명을 선거한다.
- 제38조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여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 사고 시는 전무이사, 전무이사 사고 시는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9조 이사는 재임 중 소유한 주권 300주를 감사역에게 공탁(供託)해야 한다.
 전 항의 주권은 이사의 퇴임 후 주주총회에서 그 재임 중의 사무에 대하여 승인이 있을 때는 이를 환부(還付)한다.
- 제40조 이사 및 감사역의 보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5장 계산

제41조 본 회사의 경영연도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 이사는 정시총회일로부터 1주 전에 다음의 서류를 감사역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경영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적립금, 상여금 및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議案)

제43조 이사는 전 조에 기재한 서류를 정시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본 회사는 당해 연도 총이익금에서 영업에 관한 일체의 경비 및 손실금을 공제한 잔액을 순이익금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해 이를 처분하도록 한다.

1. 법정적립금 순이익의 5/100 이상
2. 별도적립금 순이익의 5/100 이상
3. 사원퇴직위로준비적립금 순이익의 5/100 이상
4. 임원상여금 순이익의 10/100 이내
5. 주주배당금
6. 차기이월금

제45조 배당금은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주주에게 배당한다.

배당금의 통지를 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이를 수령하지 않은 주주가 있을 때는 그 배당금을 본 회사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6장 부칙

제46조 본 회사의 제1차 영업연도는 창립총회종결일로부터 19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본 회사의 부담이 되는 설립비용은 금 1만 5천 엔 이내로 한다.

제48조 본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출전 : 高山峰雄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誌』, 1936년, 7~17쪽〉

3) 토지개량부의 폐지와 산미증식계획의 중지

(상략)

4. 농업

본기(本期)의 일반 상황

본기에 특기할 만한 시설은 오랫동안의 현안인 농지령(農地令)을 발포하고, 또 해마다 전락(轉落)하고 있는 소작농 구제를 의미하는 자작농지의 설정, 전기부터 계속하여 미가(米價) 대책시설 및 1920년 이후 실시 중이던 산미증식계획의 중지와 그 선후조치 및 면작과 목양의 장려 등에 있다. 그리고 이들 제반의 기초를 이룬 것은 예전부터 착수해 온 농산어촌의 진흥운동이라는 것을 특필(特筆)해 둔다.

(1) 산미증식계획

토지개량부의 폐지와 산미증식계획의 중지

1927, 28년경부터 일어난 재계의 불황에 이어 1930년 대풍작의 영향을 받아 미가의 대폭락 등을 유인(誘因)으로 하여, 조선의 산미증식계획도 그 수행을 깊이 고려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1932년 7월 행정정리의 결과, 종래 토지개량부는 농림국으로 통일됨과 동시에 개간과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1932년의 내외지의 대풍작은 미곡통제문제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1934년 5월에 1920년 이래 실시해 온 본 계획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앞으로 모든 주력을 기설(既設) 사업의 완성에 쏟게 되었다.

(하략)

〈출전 : 『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 編, 1940년, 310쪽〉

5. 금융 관계 법령

1) 은행령 개정(1920)

은행령 중 개정의 건을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얻어 이를 공포한다.

1920년 4월 1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령 제6호

은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은행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상호(商號), 자본금액 및 본점의 소재지를 정하여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다른 사업을 겸영(兼營)하고자 할 때 또한 전 항과 동일하다.

제2조의 2 은행이 전 조 제1항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지점을 설치하고 또한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다.

은행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합병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중 '제2조'를 '제2조 제1항'으로 개정

제19조 중 '조선 외에 본점을 갖는 은행의 조선에 있어서'를 '외국회사의'로, '5년'을 '2년'으로, '5천 엔'을 '2천 엔'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 면허를 받아서 은행업을 운영 또는 타 사업을 겸영할 때
2. 부실의 신고를 하여 제2조의 면허 또는 제2조의 2의 인가를 받을 때

제22조 중 '조선 외에 본점을 갖는 은행의 조선에 있어서'를 '외국회사의'로 고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첨가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4월 1일〉

2) 은행령 개정(1923)

은행령 중 개정의 건,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勅裁)를 얻어 다음을 공포한다.

1923년 11월 24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령 제15호

은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3 은행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합병을 결의했을 경우에 상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최고(催告)는 예금자에 대하여서는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조의 4 은행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합병을 결의했을 경우에 상법 제78조 제2항 단서의 기간은 1월까지 이를 하달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에 상법 제220조의 2 단서의 기간 또한 동일하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3년 11월 22일〉

3) 조선금융제도조사회 규정(1928)

조선총독부 훈령 제20호

조선금융제도조사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28년 8월 6일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조선금융제도조사회 규정

제1조 조선에 있어서 금융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회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조선 금융제도조사회를 둔다.

제2조 조선금융제도조사회는 회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된다.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맡는다.

위원은 조선총독부내 고등관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거나 축탁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임시위원을 임명하거나 축탁한다.

제4조 회장은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회장 사고 시는 회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5조 조선금융제도조사회에 간사를 두되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정리한다.

제6조 조선금융제도조사회에 서기를 두되 조선총독부 판임관(判任官)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서기는 회장 및 간사의 지휘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28년 8월 6일〉

4) 은행령 개정(1928)

1912년 제령 제5호 은행령 개정의 건,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勅裁)를 얻어 이를 공포한다.

1928년 2월 24일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제령 제6호

1911년 제령 제5호 은행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은행령

제1조 다음에 드는 업무를 운영하는 자를 은행이라고 한다.

1. 예금의 수입(受入)과 금전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등을 함께 하는 것.
2. 환거래를 하는 것.

영업으로서 예금의 수입을 하는 자는 이를 은행으로 간주한다.

제2조 은행업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제3조 은행업은 자본금 2백만 엔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면 영업할 수 없다.

제4조 은행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5조 은행이 제2조의 면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조선총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청에 따라 전 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은행은 그 상호(商號)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이 아닌 것은 그 명칭 중에 은행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고자 할 때
2. 상호(商號)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

- 4. 지점,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 5. 본점, 기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 6. 지점 이외의 영업소를 지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제8조 은행은 대리점주가 그 대리사무에 관하여 대리점의 출장소와 기타 이에 따르는 영업소 또는 다시 대리점을 설치할 수 없다.
- 제9조 은행은 자본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는 이익을 배당할 때마다 준비금으로 그 이익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 제10조 은행은 예금의 환급준비금으로서 예금총액의 1/10 이상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전 항의 환급준비금은 현금, 지금은, 외국통화, 우편환저금, 국채, 기타 조선총독이 인가한 유가증권으로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예입(預入)해야 한다.
- 은행은 제1항의 환급준비금이 예금총액의 1/10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보충할 때까지 신규 대부 또는 어음할인을 하거나 이익배당금의 지불을 할 수 없다.
- 제11조 은행의 영업연도는 1월부터 6월까지 및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제12조 은행은 매월의 경영보고서 및 매 영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 은행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매 경영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제14조 은행의 감사역은 은행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감사서(監査書)를 매 경영 연도에 2회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 제15조 은행의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 은행의 합병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17조 은행이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 있어서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지정한 상법 제 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최고(催告)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 제18조 은행이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 있어서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지정한 상법 제 78조 제2항 단서의 기간은 1월까지 이를 하달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220조의 2 단서의 기간 또한 동일하다.
- 제19조 은행이 합병으로 인하여 저축은행령 제1조 제1항의 업무에 속하는 계약에 기

초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완료하는 때 또 그 계약에 관한 업무에 한해 이를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저축은행령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準用)한다.

제20조 은행의 휴일은 제일(祭日), 축일(祝日), 일요일, 기타 타 은행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행해지는 일반의 휴일에 한한다.

은행이 천재(天災), 기타 피치 못할 사변(事變)에 의하여 임시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은행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1조 은행이 예금의 환급을 정지할 때는 바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사유를 알려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조선총독은 언제라도 은행이 그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감사서, 기타 서류 장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 조선총독은 언제라도 부하 관리에게 명하여 은행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檢査)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조선총독은 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업무의 정지 또는 재산의 공탁(供託)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5조 은행이 법령, 정관 또는 조선총독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는 조선총독은 업무의 정지 또는 이사, 감사역의 개임(改任)을 명하거나 영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총독은 업무 정지를 명령받은 은행에 대하여 정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영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은행업의 폐지 또는 은행의 해산의 결의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8조 은행이 그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존속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그 회사가 예금 채무를 완제(完濟)할 때까지 재산의 공탁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은행이 아닌 회사가 은행의 예금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은행이 영업의 면허를 취소당했을 때는 해산한다.

제30조 은행의 청산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한다.

조선총독은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고, 재산의 공탁을 명하여 기타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1조 은행이 영업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될 때는 조선총독은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32조 조선민사령을 따르도록 한 상법에 의해 재판소가 검사(檢事)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할 때 또는 청산인이 없을 때는 조선총독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제33조 조선총독은 청산인을 선임할 때는 은행이 청산인에게 보수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4조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선총독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35조 은행의 화의(和議), 파산 또는 강제화의의 경우에 있어 은행의 검사감독에 종사하는 관리는 재판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본령 시행지 이외에 본점을 소유하는 은행이 본령 시행지 안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개설하여 은행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각 영업소 또는 대리점마다 대표자를 정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때는 해당 영업소나 대리점은 본령의 적용에 대하여 이를 은행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전 조의 규정에 구속받지 않고, 명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면허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은 특히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8조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은행업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역, 지배인, 청산인 또는 본령 시행지 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본령 시행지에 있는 대표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보고서,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서의 부실한 기재, 허위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한 관청 또는 공중(公衆)을 기망(欺罔)한 때
2. 본령에 의한 검사 시에 장부서류의 은폐, 부실한 신청, 기타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제41조 다음 경우에는 이사, 감사역,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외지(外地)에 있는 대표자를 10엔 이상 천 엔 이하의 과료(過料)에 처한다. 단, 그 행위에 따르는 형을 부과할 때는 이 제한과 상관없다.

1. 제7조 내지 제10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19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저축은행령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본령에 의해 은행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의 구비 또는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제출을 게을리 하고 여기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4. 본령에 정하는 제출 또는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실한 제출이나 공고를 한 때
 5. 제24조, 제25조, 제28조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선총독이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6. 본령을 기초로 하여 발하는 명령을 위반한 때
- 전 항의 과료에 관해서는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지정한 비송사건(非訟事件) 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은행이 본령에 의해 해야 할 공고는 신문에 한다.

부칙

본령은 19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주식회사 이외의 은행이 본령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것은 본령 시행 후 5년에 한하며 또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은행이 본령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것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그 자본금은 본령 시행 후 5년 이내에 1백만 엔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받은 사업겸영의 면허는 이를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받은 인가로 간주한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령 시행 후 1년을 기한으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본령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 이를 준용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8년 12월 24일〉

5) 저축은행령(1928)

저축은행령,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勅裁)를 얻어 이를 공포한다.

1928년 12월 24일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제령 제7호

저축은행령

제1조 다음에 드는 업무를 운영하는 자를 저축은행이라고 한다.

1. 복리(複利)의 방법에 의해 예금을 수입(受入)하는 것.
2. 1회 5엔 미만의 금액을 예금으로 수입하는 것.
3. 이미 지급기한을 정해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차례 예금을 수입하는 것.
4. 기한을 정하여 일정한 금액의 급부를 두는 것을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차례 금전을 수입하는 것.

저축은행이 아닌 것은 전 항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단, 저축은행이 아닌 은행이 예금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자와의 거래결과 생기는 5엔 미만의 금액을 예금으로 수입하거나, 수표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예금거래를 가진 자로부터 5엔 미만의 금액을 그 예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이 제한과 상관없다.

- 제2조 저축은행업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
 전 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정관과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書面)을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 저축은행업은 자본금 1백만 엔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
- 제4조 저축은행은 그 상호(商號) 중에 저축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아닌 것은 그 명칭 중에 저축은행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 저축은행은 제1조 제1항 업무 이외에 다음에 드는 업무를 겸영(兼營)할 수 있다.
1. 제1조 제1항 각 호에 드는 방법에 의해 저축된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수입하는 것
 2. 보호예치
 3. 채권의 징수
 4. 공공단체 또는 산업조합의 금전출납사무의 취급
 5. 공공단체 또는 산업조합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는 것
- 제6조 저축은행은 본령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 제7조 저축은행이 합병으로 인해 저축은행이 운영할 수 없는 업무에 속하는 계약을 기초로 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완료할 때까지 계약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8조 저축은행은 수표로 지불을 하는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예금거래를 할 수 없다.
- 제9조 저축은행은 제1조 제1항고 제5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수입한 금액의 1/3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국채를 공탁해야 한다. 단, 공탁금액 중 수입금액의 1/5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유가증권으로 국채를 대신할 수 있다.
 전 항의 수입금액은 매 반년 말일 현재에 의해 이를 지정한다.
- 제10조 예금자 및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부금의 채권자는 그 예금 및 급부금에 관해서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해 공탁한 국채 및 유가증권에 따르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11조 저축은행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것 이외에 그 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채, 지방채, 사채 또는 주식의 응모, 인수 또는 매입
 2. 국채, 기타 전 호에 드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부동산을 저당으로 하는 대부
4. 예금자에게 대하여 그 예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부
5.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급부금, 채권자에 대하여 그 급부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부
6. 은행 또는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한 예금 또는 우편저금
7. 은행인수어음의 매입

전 항에 규정한 사채 및 주식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저축은행의 소유 또는 대부금 또는 예금을 담보로 하여 수입하는 1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의 총 주식의 1/5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 1인에 대한 대부금액은 불입자본금 및 준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총액은 불입자본금 및 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제1항 제5호의 대부금액 중 이미 수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담보 또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1개 은행에 대한 예금 및 그 은행이 인수하는 어음의 매입고의 총액은 제1조 제1항과 제5조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의 1/10을 한도로 한다. 또한 해당 은행의 불입자본금 및 준비금의 1/4을 넘을 수 없다. 단, 그 총액 중 국채, 기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드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제한과 상관없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수입금의 액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저축은행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게 될 때는 제1조 제1항과 제5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에 기초하여 은행의 채무에 붙여 각 이사는 연대하여 그 변상의 책임이 없다.

전 항의 책임은 이사의 퇴임등기 전의 채무에 붙는 퇴임등기 후 2년간 존속한다.

제16조 저축은행은 다음의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제한하고 또한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저축은행업을 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역 또는 청산인을 10엔 이상 천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내지 제14조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선총독이 내리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전 항의 과료에 관해서는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지정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본령에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령에 따른다. 단, 은행령 제10조의 규정은 이 제한과 상관없다.

은행령 제17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을 예금으로 간주한다.

부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저축은행이 아닌 은행이 본령 시행 전에 행한 계약으로 제1조 제1항의 업무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할 때까지 계약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28년 12월 24일〉

6) 금융조합령 개정(1929)

금융조합령 중 개정의 건,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勅裁)를 얻어 이를 공포한다.

1929년 4월 27일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제령 제4호

금융조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금융조합은 다음 업무를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합원에 대하여 그 경제의 발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것
2. 조합원을 위하여 예금을 수입(受入)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일정한 금액의 급부를 하는 것을 약속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차례 금전을 수입하는 것

부(府)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시가지가 조합의 구역에 속하는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전 항 제1호의 자금을 위해 어음을 할인할 수 있다.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조합원을 위하여 화물(貨物)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에 대하여 창하(倉荷)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 항의 창하증권에는 상법의 창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융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저축은행령 제1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호의 업무를 하거나 동령 제5조 제5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7조 중 '은행'을 '다른 금융조합 또는 은행'으로, '그 업무'를 '은행의 업무'로 개정한다.

제9조 업무상의 여유금은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예입하고 우편저금으로 하거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조선총독이 인가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융조합은 본령에 기재하지 않은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조선총독의 명령이 있을 때는 공탁 또는 지방금융의 조절에 관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중 '주요 사무소'를 '사무소'로 고치고, 동 조 제10호를 제13호, 제9호를 제12호,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동 조 제7호의 다음에 다음의 3호를 추가한다.

8.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규정
9.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
10. 조합원 지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

제19조 중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9호'를 '제12호'로, '주요 사무소'를 '사무소'로, '이사'를 '이사, 부이사'로 개정하고 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융조합의 설립은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타인에 대항할 수 없다.

제20조 동 조 제1항에 든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2주 동안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한다. 단, 전 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 사업연도 말일의 현재에 의해 연도종료 후 1개월 안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전 항의 등기 전에 있어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통해 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요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 등기해야 하는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때는 전 항의 규정은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구획 또는 토지의 명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부에 기재한 명칭은 당연히 변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중 '민법 제47조'를 '민법 제45조 제3항, 제47조'로, '동 법 제48조 중'을 '기간에 따라'로 개정한다.

제23조에 다음의 1항을 첨가한다.

조합원이 있어야 하는 출자구수(出資口數)는 100구(口)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의 2 사망으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제57조 제1항의 예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할 수 있다.

전 조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지분을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제37조 및 제64조 중 '지방장관'을 '도지사'로 개정한다.

제31조 금융조합에 조합장 1인, 이사 1인, 감사 2인 이상 및 평의원 5인 이상을 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부이사 1인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조합장, 감사 및 평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부이사는 조선총독이 임면(任免)한다.

조합장의 선임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 설립 당시의 조합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이를 정해야 한다.

제32조 중 '이사'의 다음에 ', 부이사'를 첨가한다.

제33조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정관으로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시총회의 종결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감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정관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 중, '이사'를 삭제한다.

제35조 조합장은 이사와 공동으로 금융조합을 대표한다. 단, 조합의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다.

조합장 또는 이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조합장은 정관에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 사고 시는 이사가 이를 대리하고 결원 시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는 총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이사는 조합장 및 이사를 보좌하여 정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2 부이사의 대리권에 추가한 제한은 이를 통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7조의 2 금융조합이 조합장, 이사 또는 부이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감사조합을 대표하는 조합과 조합장, 이사 또는 부이사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제37조의 3 조합장 및 이사 사고 시 또는 결원 시는 총회의 소집은 감사가 실행한다.

조합장 및 이사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소집의 수속을 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8조 중 '본령'의 다음에, '본령에 기초하여 발하는 명령'을 추가한다.

제45조 중 '가족'을 '호주 또는 가족'으로 개정한다.

제45조의 2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대표하는 총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전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전 항의 총대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총대회에서는 해산 및 합병을 결의할 수 없다.

제45조의 3 금융조합과 어떤 조합원, 평의원 또는 총대(總代)와의 관계에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평의원 또는 총대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46조 중 '조합장'의 다음에 '및 이사'를 첨가한다.

제47조 중 '조선총독'을 '도지사'로 개정한다.

제49조의 2 금융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조합원 명부

에 기재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그 자가 조합에 통지한 주소로 보낸다.

전 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달하는 시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융조합은 정관으로 정해진 준비금의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4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제53조의 2 전 조 제1항의 준비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1. 손실을 보충할 때
2. 그 금융조합의 구역이 다른 금융조합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금융조합에 양도할 때

제53조의 3 금융조합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한 금액의 1/3 이상의 금액을 다음의 방법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1.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조선식산은행에의 예금 또는 우편저금
2.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조선식산은행에의 보호 예치

전 항의 수입금액은 매년 3월 및 9월의 각 말일 현재에 따라 정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 및 급부금의 채권자는 그 예금 및 급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 예금,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과 함께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5조 중 '조합장 및 이사'를 '조합장, 이사 또는 부이사'로 개정한다.

제56조 중 '이사'의 다음아래에, '부이사'를 첨가한다.

제61조 중 '제1항 환급'을 '전 항에 규정한 환급'으로 고치고 동 조 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추가하며 동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단, 제53조 제1항의 준비금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이 제한과 상관없다.

제67조 중 '총회'를 '총회 또는 평의회'로,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를 '조합장, 감사 또는 평의원'으로, '사업을 정지할 수 있다'를 '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70조 중 '주요 사무소'를 '각 사무소'로 개정하고 동 조에 다음의 1항을 첨가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해산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중 '주요 사무소'를 '각 사무소'로 개정한다.

제80조 중 '주요 사무소'를 '각 사무소'로 개정하고 동 조에 다음의 1항을 첨가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 2항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이를 준용

한다.

제84조 중 '주요 사무소'를 '각 사무소'로 개정한다.

제86조 중 '주요 사무소'를 '그 사무소'로 개정한다.

제89조 사무소의 이전, 기타 등기사항변경의 신청서에는 이전,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93조 중 '제150조의 2, 제151조 내지 제151조의 4, 제151조의 6 내지 제157조'를 '제150조의 2 내지 제151조의 6, 제154조 내지 제157조'로 개정한다.

제93조의 5 중 '이사 1인'을 '이사 1인 또는 여러 명 및'으로 개정하고 동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정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3조의 6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장은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하고 결원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실행한다.

제93조의 9 금융조합연합회는 조선총독이 감독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지사 그 감독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제93조의 10 등기소에 금융조합연합회등기부를 갖춘다.

제93조의 11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내지 제37조의 3, 제39조 내지 제45조, 제45조의 3 내지 제50조, 제51조 내지 제53조의 2, 제54조 내지 제56조,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3조, 제65조 내지 제70조, 제75조 내지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항 및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46조 제1항, 제47조 및 제75조 중 조합장 및 이사 또는 이사장, 제19조 제1항 제5호, 제32조, 제37조의 2, 제55조 및 제56조 중 조합장, 이사, 부이사 또는 이사장, 이사, 제30조, 제95조 중 '이사'를 '이사, 부이사'로, '이사장'을 '이사장, 이사'로,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 3'으로, '감독관청의 처분'을 '본령에 기초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으로 개정한다.

부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지정한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조합원에 대부하는 자금을 위해 어음할인을 한다.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생산물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에 대하여 창하(倉荷)증권을 발행하는 금융조합은 별도로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금융조합 및 금융조합연합회는 본령의 시행에 맞춰 등기해야 하는 사항을 본령 시행 3개월 이내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등기해야 한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조합원이 갖고 있는 출자구수가 100구를 넘는 경우에는 100구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령 시행 전 금융조합을 위한 계약으로 본령에 의해 금융조합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약이 완료할 때까지 계약에 관련한 업무에 한하여 계속할 수 있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재직하는 이사에게 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선총독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29년 4월 27일〉

7) 저축은행령 시행규칙(1929)

조선총독부령 제62호

저축은행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29년 6월 22일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저축은행령 시행규칙

제1조 저축은행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주식회사는 면허신청서에 총이사가 서명하여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書面)
3. 주식의 인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식신청증의 서식과 주식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商號), 주소 및 신청주식 수를 기재한 서면
5. 이사 및 감사역 또는 검사(檢事)역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6. 감사역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는 그 서류
7. 발기인이 이사 및 감사역을 선임할 때는 그에 관한 서류
8. 창립총회의 결의록
9. 회사 설립 시에 설치하는 지점, 기타 영업소의 위치를 기재한 서면
10. 면허신청 전 하루의 일계표(日計表)
11. 예입처의 예금증명서
12. 사업목록서

주식회사가 그 목적을 변경하여 저축은행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면허신청서에는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
3. 회사등기부 등본
4. 면허신청 전 하루의 일계표
5. 면허신청 시 현재 존재하는 거래의 성질을 알 수 있는 서면
6. 최종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7. 최종 손익계산서 및 이익처분에 관한 서면
8.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주 수(數)를 기재한 서면
9. 지점, 기타 영업소를 소유한 자는 위치를 기재한 서면
10. 사업목록

제2조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하는 서면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 운영하는 업무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1. 보통저금(저축은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예금)
2. 거치저금(저축은행령 제1조 제1항 제3호의 예금)
3. 정기적금(저축은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의 수입금)
4. 정기예금(저축은행령 제5조 제1호의 예금)

5. 보호 예치
6. 채권 추심
7. 공공단체 또는 산업조합의 금전출납사무 취급
8. 공공단체 또는 산업조합으로부터의 예금

제3조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하는 서면에는 업무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예금환급의 예고 기간에 관한 사항
2. 예금자 또는 적금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 또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예금자 또는 적금자에 대한 대부의 특약에 관한 사항
4. 보호예치상품의 종류 및 보관 방법
5. 예금이자계산 방법
6. 기타 중요한 사항

거치적금 또는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전 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예입 또는 불입의 시기, 회수(回數) 및 금액
- 2) 환급 또는 급부의 시기, 회수 및 금액
- 3) 계약의 불이행,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 4) 이자 지불 준비금 또는 급부 보전비금에 관한 사항
- 5) 권유 또는 집금(集金)의 방법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4조 환급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는 예금계약의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정기적금의 계약기간도 동일하다.

제5조 저축은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供託)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

제6조 저축은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공탁하는 국채 및 유가증권의 공탁가격은 매 반년 말일의 시가(時價)를 넘을 수 없다.

제7조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수령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공탁한 국채 또는 유가증권의 종류, 기호, 번호, 매수, 권면액, 불입액 및 공탁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에 드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자 및 주소
2. 사채(社債)가 있을 때는 이율과 담보의 유무 및 종류
3. 거래소에서의 최근의 상장, 기타 실가(實價)를 알 수 있는 사실

제10조 저축은행이 합병의 결의를 한 때는 조선민사령에 따를 것을 정한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수속을 완료한 후 저축은행의 총 이사가 서명한 인가신청서에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결의록 및 사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서면(書面)
2. 합병에 관한 계약서
3. 합병 후 존속할 저축은행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한 저축은행의 정관 및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기재한 서면
4. 조선민사령에 따를 것을 정한 상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조선민사령에 따를 것을 정한 상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최고(催告) 및 동 법 제2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서면

제11조 저축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인가신청서에 이유서(理由書) 및 주주총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본감소에 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한 전 조 제4호 및 제5호에 드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저축은행이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인가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저축은행은 다음에 드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은행령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드는 사항에 대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아 이를 실행한 때
2.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이 있을 때

제14조 저축은행의 매월의 영업보고서 및 매 경영연도의 업무보고서는 부속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 저축은행의 감사역이 작성해야 하는 감사서는 부속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본령에 의한 제출 또는 서류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그 제출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는 이사 또는 감사역을 1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7조 본령에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본령은 저축은행령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업무보고서 추형)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9년 6월 22일〉

8) 발표될 신탁업령은 현상을 참작 안할 듯, 따로 과도법규로 정리 (기사)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金融制度準備調査委員會)의 예회(例會)는 9일에 총독부에서 열릴 터인데, 이 예회는 당분간 계속하여 그 결과로 조선신탁업령(朝鮮信託業令) 법문이 탄생할 것이므로 준비조사의 진행정도는 물론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신탁령은 대체로 일본의 신탁법(信託法)에 준거하여 입법 정신으로 할 터이나, 업령은 일본과 같은 상속세법이 없는 조선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인 듯하며, 현재 조선신탁사업의 상태는 절대로 참작하지 않고, 신탁업령 발표 후, 그 법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자연 폐지될 것도 부득이 하나 단 법령실시로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은 없을 것이므로 상당히 과도적 법규를 만들어 점차 정리할 방침을 취할 터이더라.

〈출전 : 發布될 信託業令은 現狀을 參酌 안을 듯, 따로 過度法規로 整理
『中外日報』, 1930년 4월 10일〉

9) 조선신탁업령(1931)

조선신탁업령,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勅裁)를 얻어 이를 공포한다.

1931년 6월 9일

조선총독 자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령 제8호

조선신탁업령

제1조 신탁업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

전 항의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정관과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書面)을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 신탁업은 자본금 200만 엔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

제3조 신탁회사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조 신탁회사가 제1조 면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조선총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청으로 인한 전 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신탁회사는 상호(商號)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신탁회사가 아니면 그 명칭 중에 신탁업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담보부회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와 상관없다.

제6조 신탁회사는 대리점 주(主)가 대리사무에 관하여 대리점의 출장소, 기타 영업소 또는 복대리점을 개설할 수 없다.

제7조 신탁회사는 다음에 드는 재산 이외의 것에 대하여 신탁 인수를 할 수 없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토지 및 정저물(定著物)

6. 토지권 및 토지의 임차권

제8조 신탁회사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방법을 특정(特定)하지 않은 금전신탁에 한하여 원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미리 일정한 액수의 이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에 이를 보전하거나 보충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제9조 조선민사령에 따를 것을 정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금전신탁에 대하여 운용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의해 이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을 이행(履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1. 보호예치

2. 채권의 보증

3. 부동산매매의 매개(媒介) 또는 금전이나 부동산의 대차 매개

4. 국채, 지방채, 회사채 또는 주식의 모집, 그 불입금의 수입(受入) 또는 원리금이나 배당금 지불의 취급

5.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6. 회계의 검사

7. 다음의 사항에 관한 대리사무

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貸借)

나)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

다) 채권 추심

라) 채무의 이행

마) 보험

조선총독은 채무의 보증에 대해 필요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것 이외에 영업상의 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채, 지방채, 회사채 또는 주식의 응모, 인수 및 매입

2. 국채, 기타, 전 호(號)에 드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

4. 부동산의 매입

5. 부동산 또는 법령에 따라 설정한 재단(財團)을 저당으로 하는 대부

6. 공공단체에 대한 대부

7. 은행 또는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한 예금 또는 우편저금

8.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인수하는 어음의 매입

전 항에 규정하는 회사채, 주식 및 동산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입가격의 총액은 불입자본금 및 준비금의 1/3을 넘을 수 없다.

제12조 신탁회사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담보로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1/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국채를 공탁해야 한다. 단, 그 금액은 100만 엔을 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전 항의 공탁금액 중 3/5을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전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수익자는 신탁회사가 전 조의 규정에 의해 공탁한 국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신탁회사는 자본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는 이익을 배당할 때마다 준비금으로 그 이익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제15조 신탁회사의 영업연도는 6월부터 11월까지 및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한다.

제16조 신탁회사는 매월의 경영보고서 및 매 경영연도의 업무보고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신탁회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매 경영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8조 신탁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신탁회사의 합병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0조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한 신탁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신탁회사의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탁회사의 합병에 대해 이익을 제기하는 수익자가 있을 때는 그 신탁에 대해서는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42조와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신탁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2.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3. 본점 및 지점 이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4. 본점, 기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제22조 조선총독은 언제라도 신탁회사에게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서류 장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 조선총독은 언제라도 부하 관리에게 명하여 신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조선총독은 신탁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의 변경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신탁회사가 법령, 정관 또는 조선총독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조선총독은 업무의 정지 또는 이사, 감사역의 개임(改任)을 명하거나 영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총독은 업무의 정지를 명령받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정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영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신탁업의 폐지 또는 신탁회사의 해산의 결의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8조 신탁회사가 그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존속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그 회사가 신탁에 관한 채권을 완제(完濟)할 때까지 재산의 공탁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아닌 회사가 신탁회사의 임무종료에 따라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신탁회사가 영업의 면허를 취소당했을 때는 해산한다.

제30조 신탁회사의 청산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한다.

조선총독은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고, 재산의 공탁을 명하여 기타 청산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31조 신탁회사가 영업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했을 때는 조선총독은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32조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상법(商法)에 의해 재판소가 검사(檢事) 또는 이 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해야 할 때 또는 청산인이 없는 때는

- 조선총독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를 선임한다.
- 제33조 조선총독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는 신탁회사가 이에 보수를 줄 수 있다. 그 액수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 제34조 조선총독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제35조 신탁회사의 화의(和議), 파산 또는 강제화의의 경우에 재판소는 신탁회사의 검사감독에 종사하는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검사(檢査) 또는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제36조 신탁회사의 화의, 파산 또는 강제화의의 경우에 신탁회사의 검사감독에 종사하는 관리는 재판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7조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역, 지배인 또는 청산인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의 부실한 기재, 허위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관청 또는 공중(公衆)을 기망(欺罔)한 때
 2. 본령에 따라 검사할 때 장부서류의 은폐, 부실한 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한 때
- 제40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역,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을 10엔 이상 1천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단, 그 행위에 형을 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다.
1.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의 규정 또는 같은 조에 기초한 명령을 위반하여 신탁에 대하여 보전 또는 보충의 계약을 한 때
 3.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한 때
 4. 제22조 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5.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선총독이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6. 본령에 기초하여 발하는 명령을 위반한 때
 7. 신탁회사가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해야 하는 신탁재산의 관리를 하지 않은 때
 8. 신탁회사가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39조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 또는 계산을 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때
 9. 신탁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때
- 전 항의 과료에 관해서는 조선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비송사건수속법(非訟事件手續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령 시행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본령을 시행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신탁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본령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신탁업의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탁회사가 전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자본금은 본령 시행 후 5년 이내에 1백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신탁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본령에 따라 영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본령 시행 후 5년을 한도로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신탁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본령에 따라 영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본령 시행 전 그 한 계약은 본령에 따라 신탁회사가 할 수 없는 업무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약의 완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신탁업을 운영하는 자는 본령에 따라 영업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령 시행 전 그 한 신탁의 인수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완료할 때까지 그 신탁의 인수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31년 6월 9일〉

10) 조선신탁업령 시행규칙(1931)

조선총독부령 제115호

조선신탁업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31년 9월 17일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조선신탁업령 시행규칙

제1조 신탁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면허신청서에 총 이사가 서명하여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書面)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식신청서의 양식과 주식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商號), 주소 및 신청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5. 이사 및 감사역 또는 검사역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6. 검사역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는 그 등본
7. 발기인이 이사 및 감사역을 선임한 경우는 이에 관한 서류
8. 창립총회의 결의록(決議錄)
9. 영업소의 위치를 기재한 서면
10. 면허신청 전 하루의 일계표(日計表)
11. 예치처의 예금증명서

주식회사가 그 목적을 변경하여 신탁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면허신청서에 전항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드는 서류 이외에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사등기부 등본
2. 면허신청 시 현재 존재하는 거래상황을 알 수 있는 서면
3. 최종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4. 최종 손익계산 및 이익처분에 관한 서면
5.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및 그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대리점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위치, 대리점주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과 대리점 계약서

제2조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하는 서면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운영하는 신탁업무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갑) 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그 운용방법에 따른 구분

1. 운용방법을 특정한 금전신탁
2.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금전신탁

을)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인수 시 수입(受入)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분

1.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
2. 유가증권의 신탁
3. 금전채권의 신탁
4. 동산의 신탁
5. 토지 및 그 정저물(定著物)의 신탁
6. 토지권의 신탁
7. 토지 임차권의 신탁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하는 서면에는 구분에 따라 그 겸영하는 업무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1. 보호예치
2. 채권의 보증
3. 부동산매매의 매개
4. 부동산대차의 매개
5. 금전대차의 매개
6. 국채, 지방채, 회사채 또는 주식의 모집 또는 그 불입금 수입의 취급
7. 국채, 지방채, 회사채 또는 주식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의 지불의 취급
8.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9. 회계의 검사(檢査)
10.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의 대리사무
11.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의 대리사무

12. 채권 추심의 대리사무
13. 채무 이행의 대리사무
14. 보험의 대리사무

제3조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하는 서면에는 그 운영하는 신탁업무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에 드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신탁인수 시 수입하는 동산의 종류
2. 신탁사무의 처리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재산의 종류
3. 조선신탁업령(이하 줄여서 신탁업령으로 칭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보충에 관한 사항
4. 신탁업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 재산의 종류 및 가격 산정의 방법
5. 신탁회사가 받는 보수액의 계산방법
6. 금전신탁에 대하여 조선민사령(이하 줄여서 민사령으로 칭함)을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해제(解除)에 관한 사항
7.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특별 이익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조 신탁계약을 할 때에는 서면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신탁계약서에는 다음에 드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탁자 및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여기에 서명해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상호
2. 불특정의 수익자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수익자가 있을 때는 그 범위, 자격, 기타 수익자가 되어야 하는 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사항
3. 수익권의 발생에 대하여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정하는 경우는 이에 관한 사항
4. 신탁의 목적
5. 신탁계약체결 시에 신탁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격
6. 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 또는 신탁재산이라는 것의 표시 및 기재에 관한 사항
7. 계약 기간
8. 신탁사무의 처리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재산을 특정 또는 지정한 경우는

그 종류

9. 수익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신탁재산의 종류와 그 교부 방법 및 시기
10. 신탁재산인 금전과 그 신탁재산인 금전 또는 고유재산인 금전과의 합동운용에 관한 사항
11. 신탁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보충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전과 보충의 비율, 기타 이에 관한 사항
12. 신탁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가격 산정의 방법
13. 신탁회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에 대하여 그 액수 또는 계산방법, 지불의무자와 지불의 방법 및 시기
14.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公課), 수선비,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
15. 금전신탁에 대하여 민사령을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해제에 관한 사항
16. 신탁종료의 경우 최종계산 및 그 보고에 관한 사항
17. 다음에 드는 사항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 가) 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 정리인의 지정
 - 나) 수탁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신탁사무의 처리
 - 다) 수탁자의 사임
 - 라) 임무종료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선임
 - 마) 신탁종료의 사유
 - 바)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
 - 사) 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신탁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해제
18. 증서작성 연월일
19.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조 신탁회사는 300엔 미만의 금전신탁의 인수를 할 수 없다.

제7조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1년 이하의 금전신탁의 인수를 할 수 없다. 단, 운용방법의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8조 신탁회사가 신탁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예치한 일정한 액수의 이익을 보충

해야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보합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보합을 넘을 수 없다.

제9조 신탁회사는 신탁업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방법에 의한 것 이외의 운용방법의 특정하지 않는 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을 운용할 수 없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전 항의 금전 이외의 것의 운용에 대해서는 신탁행위를 통해 별도의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신탁회사는 그 보증의 책임에 임해야 하는 한도의 확정하지 않은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

제11조 신탁회사의 보증하는 채무의 총액은 그 불입자본금 및 준비금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제12조 동일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채무의 총액은 불입자본금 및 준비금의 1/10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그 회사를 위하여 보증하는 채무의 총액은 해당 회사의 불입자본금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의 불입금 및 준비금의 1/2을 넘을 수 없다.

제14조 채무자가 회사가 아닐 때는 신탁회사는 물상담보(物上擔保)를 징수하지 않으면 보증을 할 수 없다. 단, 채무자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조 신탁회사가 국채, 기타 신탁업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법령에 의해 설정한 재단(財團)을 담보로 하여 보증한 채무액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의 보증하는 채무의 총액에서 이를 나눈다.

제16조 신탁회사는 신탁업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고 또 회사채 및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드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도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자 및 그 주소
2. 회사채가 있을 때는 이율과 담보의 유무 및 그 종류
3. 거래소에서의 최근의 상장, 기타 실가(實價)를 알 수 있는 사실

제17조 신탁회사는 신탁업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액이 자본금의 1/20(자본금 1천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엔)에 이를 때까지는 매 영업연도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자본금의 1/200 이상(자본금 1천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엔 이상)

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영업연도 말일에 신탁재산의 가액(價額)이 자본금의 액수에 이를 때는 해당 영업연도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전 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본금의 1/10 이상(자본금 1천만 엔 이상인 경우는 100만 엔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탁을 할 필요가 있다.

제18조 신탁업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

제19조 신탁업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국채 및 유가증권의 공탁 가액(價額)은 매 영업연도 말일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신탁회사는 신탁업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수령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1조 신탁업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공탁한 국채 및 유가증권은 그 공탁가액이 자본금의 1/10(자본금 1천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면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공탁환의 목적으로 공탁한 국채 및 유가증권의 공탁가액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상관없다.

제22조 신탁회사가 신탁업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국채 또는 유가증권의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때는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탁회사가 전 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는 그 사유와 국채 또는 유가증권의 종류, 기호, 번호, 매수, 권면액(券面額), 붙입액 및 공탁가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신탁업령 제16조의 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준비금 및 이익의 배당에 관한 서면으로 나누어 부속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해야 한다. 전 항의 업무보고서는 영업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은 때는 이것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매월의 영업보고서는 부속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신탁회사가 신탁업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하는 대차대조표는 전 조의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신탁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유서
 2. 신탁회사에서 상무 및 종사하고자 하는 다른 업무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서면
 3. 종사하고자 하는 다른 업무의 상황설명서 및 계획서
 4. 신탁회사와 종사하고자 하는 다른 업무와의 거래, 기타 관계를 기재한 서면

제26조 신탁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때는 민사령에 따르도록 정한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수속을 완료한 후 신탁회사의 총 이사가 서명한 인가신청서에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결의록 및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면
2. 합병에 관한 계약서
3.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하는 신탁회사의 정관과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
4. 민사령에서 따르도록 정한 상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5. 민사령에서 따르도록 정한 상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催告)와 동 법 제2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지(通知)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서면

제27조 신탁회사는 신탁업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유서
2.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록(決議錄)
3.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에 관한 방법을 기재한 서면, 최근의 일계표(日計表) 및 장래의 수지개산서(收支概算書)
4. 자본금을 소멸하는 경우에는 전 호에 드는 서류 이외에 전 조 제4호 및 제5호에 드는 서류
5.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기재한 서면
6. 대리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서

제28조 신탁회사가 자본금의 변경 또는 지점,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점의 설치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다.

제29조 대리점 설치의 인가는 대리점의 위치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0조 신탁회사의 본점 및 지점 이외의 영업소에는 출장소라는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

제31조 신탁회사가 신탁업의 폐지 또는 해산을 결의한 때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에 드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유서
2. 주주총회의 결의록
3. 최근의 일계표
4. 자산부채의 내용을 증명한 서면
5. 신탁에 관한 채무변제의 방법을 기재한 서면

제32조 신탁회사는 다음에 드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영업을 개시한 때
2. 상호(商號)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또는 지점의 설치 또는 신탁업령 제19조 또는 제21조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실행한 때
3. 이사, 감사역 또는 지배인의 취임 또는 퇴임이 있을 때
4.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을 때
5. 본점 및 지점 이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폐지한 때
6. 대리점 계약의 변경, 소명 또는 갱신이 있을 때
7. 지불정지를 한 때 또는 지불정지 중인 신탁회사가 지불을 개시한 때
8. 화의(和議) 개시를 신청하고,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되거나 화의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9. 파산의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에 대하여 항고를 하거나 항고에 대하여 재판소의 결정을 받은 때
10. 강제화의인가 결정이나 강제화 의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11. 신탁회사가 합병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영업을 양수(讓受)한 때 전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부기(附記)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폐지 연월일, 폐지의 이유 및 수익자에 대한 처치를 기재한 서면, 제8호의 경우에는 화의의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33조 신탁업령 제32조 및 제34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청구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34조 신탁회사의 청산인은 취직 후 지체 없이 회사재산의 상황을 조사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산이 완료된 때는 지체 없이 결산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대차대조표는 부속업무 보고서양식에 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35조 신탁업령 또는 본령에 의해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탁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단, 신탁업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매월의 영업보고서, 동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을 명령받은 서류 및 동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檢査)에 관한 서류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6조 본령에 의해 서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으로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이사 또는 지배인을 과료에 처한다.

제38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역, 지배인 또는 청산인을 1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본령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게을리 하여, 그 신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부칙

본령은 193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본령 시행 시 현재 신탁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탁업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주식회사가 제출하는 면허신청서에는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외에 본령 시행 시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신탁업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신탁업을 운영하는 자가 신탁업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 전 그 한 계약이 본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업무보고서 추형)

제○기 업무보고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업무 보고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道)

○부(府)/○군(郡)

○읍(邑)/○면(面)

○정(町)/○동(洞)/○리(里)

○신탁주식회사

이사 성명 인

이사 성명 인

이사 성명 인

감사역 성명 인

조선총독 전(展)

- 목차 -

1. 제○기 영업보고서
2. 제○기말 대차대조표
3. 제○기 손익계산서
4. 제○기 준비금 및 금리의 배당에 관한 서면

<주의>

1. 본 보고서 양식 기재 이외의 계정이 있을 때는 그 성질이 가장 근사(近似)한 것에 준하여 별도로 항목을 설정하여 적당한 장소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2. 본 보고서는 횡서(橫書)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기 (○○○○년 ○월 ○일~○○○○년 ○월 ○일) 영업보고서